



# 구조조정 가이드북

# 베트남

GUID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I.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04

-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06
-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 10
  - [Q&A]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10

## II.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 양도

14

-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16
  - [사례] 중간 지주회사 지분·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17
-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18
  - [사례]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19
- 3.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 28
  - [Q&A]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29

## III.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34

- [Q&A]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37
-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37
-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 46
  - [사례]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 51
  - [사례]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55
  - [Q&A]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56
- 3. 자산 매각 후 휴업 ..... 57
  - [Q&A]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61

## IV. 현지법인 해산(청산)

64

- 1. 해산 요건.....66
- 2. 해산·청산 절차.....68
  -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의 채무는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하는가?..... 74
  -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에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는가?..... 79
  - [Q&A]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 80
  - [Q&A]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 하는가?.....83

## V. 현지법인 파산

84

- 1. 파산 개시 신청.....86
  - [사례]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88
- 2. 파산 절차.....89
  - [Q&A] 베트남에서 실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89
  - [Q&A]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100

## VI. 기타 유의 사항

102

-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104
-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105
-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106
-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107

# I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06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10
[Q&A]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10

## I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 개요

### 1.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형

한국 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 ① 한국 기업이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기업(또는 개인)은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 투자 허가 성격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을 발급받고,<sup>1)</sup> 이를 근거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을 발급받음으로써 설립되며, 한국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을 납입한다.

단일한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정관자본금 전액을 출자할 경우에 해당 현지법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한국 투자자는 1인 사원(Owner, 1인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할 경우, 해당 현지법인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Multi-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되고, 투자한 한국 기업 등 투자자는 각각 사원(Member,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이 된다. 한국 기업 등 투자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로 설립할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일 경우에 각 투자자는 주주(Shareholder)가 된다.

1)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중요성, 파급효과 등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 이전에 국회, 수상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결정(Investment Policy Decision/Approval, 일종의 사전승인 성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 ②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합작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기업(또는 개인)과 베트남 기업(또는 개인)이 함께 사원 또는 주주로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주식회사인 경우)의 각 결의로 해당 현지법인의 경영·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한국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써 설립되는 점은 위 ①의 경우와 동일하다.

## ③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한국 투자자가 싱가포르, 홍콩 등 비교적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제3국에 중간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고, 중간 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베트남 기업 등과 합작으로 출자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다. 중간 지주회사도 외국인 투자자이므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증 발급으로 설립되는 점은 위 ① 및 ②의 경우와 동일하다.

## ④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주식 인수

기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지분(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또는 주식(주식회사의 경우)을 인수한 한국 기업이 사원 또는 주주로서 해당 베트남 법인의 경영·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한국 투자자가 지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①과 유사한 결과가 되고, 한국 투자자가 지분·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기존 현지인 사원·주주가 나머지 일부 지분·주식을 보유한 채 잔류하는 경우에는 위 ②와 유사한 투자 구조가 된다.

## ⑤ 동업계약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이하 「투자법」)<sup>2)</sup> 제27조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사이에 동업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을 체결하

2) 베트남 국회 2020. 6. 17. 의결 2021. 1. 1. 발효 Law No. 61/2020/QH14(베트남 국회 2022. 1. 11. 의결 2022. 3. 1. 발효 Law No. 03/2022/QH15로 일부 개정)를 의미한다.

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투자자들이 동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Co-ordinating Board)을 두어 베트남에서 특정한 투자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투자 프로젝트 수행 방안은 베트남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고(「투자법」 제28조 제3항),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현지 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립할 수 있다(「투자법」 제49조 제1항).<sup>3)</sup> 해당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투자법」 제28조 제2항).

#### Article 27 Investment in the form of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1. A BCC contract signed between domestic investors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law.
2. A BCC contract signed between a domestic investor and a foreign investor or between foreign investors requires the procedures for issuance of an IRC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is Law.
3. The parties to a BCC contract shall establish a co-ordinating board to perform the BCC contract. The functions, duties and powers of the co-ordinating board shall be as agreed by the parties.

#### Article 28 Contents of BCC contract

1. A BCC contract must contain the following basic items:
  - (a) Names, addresses, and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the transaction address or address of the location at which the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 (b) Objectives and scope of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 (c) Contributions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nd distribution of business investment results between the parties;
  - (d) Schedule and dura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 (d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 (e) Amendment, assignment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 (g) Liability for breach of the contract an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3) 단, 위 ① 내지 ③ 방안처럼 현지법인을 설립·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 투자자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개별 합의해야 하고, 현지에서 취득하는 인허가와 자산은 모두 현지인 투자자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2. During performance of the BCC contrac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may reach agreement on use of assets formed from business co-oper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enterprises.
3. The parties to the BCC contract are entitled to reach agreement on other items which are not contrary to law.

**Article 49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office of foreign investor to BCC contract**

1. A foreign investor to a BCC contract may establish an operating office in Vietnam to implement the contract. The foreign investor to the BCC contract shall decide the location of the operating office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for contract performance.
2. The operating office of a foreign investor to a BCC contract shall have a seal, may open accounts, recruit employees, sign contracts and conduct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BCC contract and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establishment of the operating office. p
3. The foreign investor to the BCC contract shall submit a registration file for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office to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gency [IRA] of the locality in which the proposed operating office is to be located.
4. The registration file for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office shall comprise:
  - (a) Written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office containing the following items:
    -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if any)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BCC contract in Vietnam;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perating office; contents, duration and scope of activities of the operating office; full name, residential address, and [serial number of] the people's identity card or citizen's card or passport of the head of the operating office.
  - (b) The decision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BCC contract on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office;
  - (c) Copy decision on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e operating office;
  - (d) Copy BCC contract.
5. The IRA shall,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file prescribed in clause 4 of this article, issue an ope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operating office to the foreign investor to the BCC contract.

## 2. 베트남 투자 철수 유형

### 가.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 철수

위 ① 내지 ④의 투자 방식, 즉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해당 현지법인을 통해 베트남에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a)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의 양도
- (b)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 (c) 현지법인 해산(청산)
- (d) 현지법인 파산

#### **Q** 모회사가 폐업할 경우에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정도 청산을 해야 하는지?

**A**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한 한국 기업(모회사)이 먼저 한국에서 폐업한 경우, 해당 지분·주식은 한국 법상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된다.

즉, 베트남 「기업법」상 모회사의 폐업만으로 바로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이 청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① 폐업한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주식을 감자하거나 ② 지분·주식을 취득한 타인이 해당 현지법인의 새로운 사원 또는 주주가 된다.<sup>4)</sup>

부연하면, 한국 모회사가 청산할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에 관한 정보를 양국의 법인 등기 관할기관이 자동으로 공유하지는 않으므로, 한국 쪽에서 베트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로 모회사 청산이 종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베트남 쪽에서 자회사의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베트남 자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모회사가 없어서 결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회사는 청산을 완료하기 전에 자회사 지분을 처분

4)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베트남 「기업법」 제53조 제4항 (c)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베트남 「기업법」 제78조 제6항,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회사 폐업 및 청산 시 모회사 보유 지분의 취급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할 필요가 있다. 처분 방법으로는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감자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법리상 지분 100%를 감자하면 자회사가 자본금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자회사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실무상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감자하여 출자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 현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감자는 법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제3자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모회사의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는 자회사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감자한 자본금의 상환도 불가능하므로, 감자 방안을 취하더라도 그 시점은 모회사의 청산이 종결되기 이전이어야 한다.

## 나. 동업계약(BCC) 유형 투자 철수

위 ㉔와 같은 동업계약(BCC) 방식의 투자 철수는 기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방법 기타 동업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업계약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현지 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립한 경우에는 「투자법」 제 50조에 따라 투자등록증 관할기관[Investment Registration Agency, 통상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획투자국(DPI)가 이에 해당]에 해당 사무소의 운영 종료 신고를 해야 한다.

### **Article 50 Termination of operation of the operating office of foreign investor to BCC contract**

1. A foreign investor shall, within seven (7)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erminating the operation of its operating office, send a file notifying the IRA in the locality where the operating office is located.
2. The file notifying termination of the operation of an operating office [comprises]:
  - (a) The decision terminating operation of the operating office in the case of early termin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ng office;
  - (b) List of creditors and amount of debts which have been paid;
  - (c) List of the employees a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which have been resolved;

(d) Certification of the tax authority on completion of tax obligations;

(dd) Certifi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gency on completion of obligations in relation to social insurance;

(e) The ope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operating office;

(g) Copy IRC;

(h) Copy BCC contract.

3. The IRA shall,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file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issue a decision revoking the ope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operating office.



구조조정 가이드북

베트남

GUIDE



# III



#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 양도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16
[사례] 중간 지주회사 지분·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17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18
[사례]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19
3.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28
[Q&A]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29

## III

## 현지법인 또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 양도

베트남에는 영업용 자산과 영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또는 특정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베트남 기업의 인허가를 포함하여 근로자, 거래(계약)관계, 자산 등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분·주식양수도 거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직접 양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 투자자가 제3국의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출자한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가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중간 지주회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간 지주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와 베트남 현지법인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각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1. 중간 지주회사 매각

한국 기업은 중간 지주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간 지주회사를 매각하고, 그 양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와 목적물이 모두 역외에 있으므로,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는 특별히 인허가 발급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sup>5)</sup>

중간 지주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와 베트남 현지법인을 매각(지분·주식 양도)하는 경우('II.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참고)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 단, 거래 종결 선행조건으로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대개 General Director를 의미함) 또는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법인의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 절차는 (베트남 법인을 매각하는 경우 필요한) 사원 또는 주주 변경을 위한 인허가와 비교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구분	중간 지주회사 매각 <sup>6)</sup>	베트남 법인 매각
인허가	간단(기업 등기 변경), 단기(약 1주)	복잡(외국인 지분취득 사전승인,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 변경 <sup>7)</sup> ) 장기(약 2~3개월)
세금	비교적 낮음(싱가포르와 홍콩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고, 0.2%의 인지세 부과)	양도인이 한국 투자자인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sup>8)</sup> 에 따라 베트남에서 과세, 양도인이 중간 지주회사인 경우 <sup>9)</sup> 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립 국가와 베트남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과

**사례**

**중간 지주회사 지분·주식을 양수도한 사례**

과거 일본 기업이 홍콩에 설립한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분 70%를 출자하였다.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홍콩 지주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베트남 합작법인을 인수하였다. 이를 위해 홍콩 지주회사의 주식 양수를 위한 인허가를 홍콩에서 진행했고, 베트남에서는 합작법인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만을 위한 기업등록증 변경을 진행했다. 홍콩 지주회사의 주식양수도 수익에 대해 베트남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베트남 세무서는 이와 같이 역외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원칙을 들어 베트남에서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주식을 양수도 하는 절차, 인허가, 세금 등은 중간 지주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케이만,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간단하고 어렵지 않다.
- 매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이 출자하여 베트남 내에 설립한 법인)일 경우에는 사전승인(출자 또는 지분·주식양도의 사전 등록으로서 일종의 사전승인, 약 3~4주 소요)과 투자등록증 변경(약 3~4주 소요)이 필요하고, 매수자가 내국인 또는 내자법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기업등록증 변경(1주 소요)만 하면 된다. 사전승인에 관하여는 아래 'II. 2. 나. 2)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투기업인 경우의 사전승인' 부분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정」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베트남 현지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었으나, 동 협정은 2019. 11. 27. 개정되고 2021. 1. 20. 발효되어,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15% 이상을 양도할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있다. 베트남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지분양도세가 부과된다(출자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한다면 조세 부담은 없을 것이다).
- 중간 지주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중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해당 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주식(주식회사인 경우)을 양도하고 양수도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s, 이하 「기업법」)<sup>10)</sup>이나 투자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른 양도 제한, 또는 「투자법」에 따른 양도 제한과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기업법」 또는 주주·사원 간 계약에 따른 양도 제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단독 사원(Owner)이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그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sup>11)</sup>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수도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주식 양수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1)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제한

「기업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 가격 등 조건을 정하여 다른 모든 사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동등한 조건하에 양도 대상 지분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간 다른 사원들이 양수하지 않은 잔여 지분을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 Article 52 Assignment of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1. Except in the cases stipulated in articles 51.4, 53.6 and 53.7 of this Law, a member of a multiple member LLC has the right to assign a part or all of its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to other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a) Offering such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for sale to all other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in the company on equal terms of offer;

10) 베트남 국회 2020. 6. 17. 의결, 2021. 1. 1. 발효 Law No. 59/2020/QH14(베트남 국회 2022. 1. 11. 의결, 2022. 3. 1. 발효 Law No. 03/2022/QH15로 일부 개정)를 의미

11) 「기업법」 제76조 제1항 (h)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company owner being an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rights: (···) to make decision on assignment of all or part of the charter capital of the company to other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b) Assigning to non-members on the same conditions as the offer applicable to other members as stipulated in sub-clause (a) above when the other members of the company do not purchase or do not purchase in full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

나아가 사원(투자자)들 사이의 계약 및/또는 회사 정관으로 위 「기업법」상 양도 제한을 강화하거나, 다른 내용의 양도 제한을 추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원은 그러한 별도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

**[사례] 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행사 사례**

과거 다른 외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여러 매수 희망자들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하여 한국 기업이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지분 양도인이 합작 파트너사에 동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지하였고, 합작 파트너사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해당 법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2) 주식회사 창립주주의 주식 양도 제한**

「기업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기업등록증 최초 발급일(회사 설립일)부터 3년간 창립주주의 보통주는 다른 창립주주에게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창립주주는 주주총회의 주식 양도 승인 결의 시에 의결권이 없다. 단, 「기업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주식회사 설립 후(기업등록증 최초 발급 후) 증자에 따른 주식,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 한 번 양도된 주식의 양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Article 120 Ordinary shares of founding shareholders**

(...)

3.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ERC to the company, ordinary shares of a founding shareholder may be freely assigned to other founding shareholders, and shall only be assigned to persons not being founding shareholders upon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founding shareholders intending to assign ordinary shares may not vote on the assignment of such shares.
4. All restrictions prescribed in clause 3 abov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ordinary shares:
  - (a) Additional shares which founding shareholders have afte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 (b) Shares which have been assigned to others not being founding shareholders.

「기업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창립주주의 주식 양도 제한 이외에는 주주는 자유로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제한을 주권(share certificate)에 기재하면 그에 따라 주식 양도가 제한된다.

**Article 127 Assignment of shares**

1. Shares may be freely assigned, except in the cases stipulated in article 120.3 of this Law and except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provides restrictions on assignment of shares.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provides restrictions on assignment of shares, such restrictions shall only be effective if they are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share certificates.
-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 간 합의에 따른 양도 제한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 간 계약 및/또는 회사 정관으로 위 「기업법」상 양도 제한을 강화하거나, 다른 내용의 양도 제한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그러한 별도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나. 「투자법」상 양도 제한 및 인허가

### (1)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지분율 등 제한

지분·주식의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투자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a) 「투자법」 제9조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을 준수해야 하고, (b) 「투자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장해야 하며, (c) 토지사용권 향유, 섬과 육지·해상 국경지역 토지 사용과 관련해 베트남 「토지법」(Law on Land, 이하 「토지법」)<sup>12)</sup> 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회사 등을 의미한다.

**Article 24 Investment in the form of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purchase of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

2. The capital contribution, purchase of shares or purchase of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by a foreign investor must satisfy the following provisions and conditions:

- (a) [The foreign investor must satisfy] the market approach condi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as prescribed in article 9 of this Law;
- (b) [The foreign investor must] ensure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as prescribed in this Law;
- (c) [The foreign investor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land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land use rights and conditions for using land in islands and in border and coastal communes, wards and towns.

참고로, 「투자법」 제9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산업 분야별 시장 접근 제한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법」 제9조 제2항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산업 분야를 크게 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금지되는 산업 분야(이하 ‘금지 업종’)와 ②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산업 분야(이하 ‘조건부 업종’)로 나누고, 「투자법」 제9조 제3항은 조건부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내용을 (a) 지분율, (b) 투자 방

12) 베트남 국회 2013. 11. 29. 의결, 2014. 7. 1. 발효 Law No. 45/2013/QH13을 의미

식, (c) 투자 활동 범위, (d) 외국인 투자자 기타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 요건과 (dd)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과 베트남 법령 등에 따른 기타 조건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투자법」 제9조 제4항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 3. 26. 베트남 정부는 Decree No. 31/2021/ND-CP(이하 'Decree 31')를 공포·시행하였다.

#### **Article 9 Industries, trades and market approach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ors**

1. Foreign investors are subject to the same market approach conditions as apply to domestic investors except for the case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2. Based on laws and resolu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rdinances and resolution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ecre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the Government shall announce a List of industries and trades for which market approach is restricted for foreign investors, comprising:
  - (a) Industries and trades for which there has not yet been market approach;
  - (b) Industries and trades for which market approach is conditional.
3. Market approach condi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as stipulated in the List of industries and trades for which market approach is restricted for foreign investors comprise:
  - (a) Ratio of ownership of charter capital of foreign investors in economic organizations;
  - (b) Forms of investment;
  - (c) Scope of investment operation;
  - (d) Capacity of investors and other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investment activity;
  - (dd) Other conditions pursuant to laws and resolu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rdinances and resolution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ecrees of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treaties of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member.
4.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on this article.

## (2)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투기업인 경우의 사전승인

지분·주식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지분·주식양수도의 결과로 투자자 구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양수도 거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a) 조건부 업종을 영위하는 대상 현지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 (b)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법」 제23조 제1항 (a)호, (b)호 및 (c)호에서 정한 각 회사<sup>13)</sup>가 대상 현지기업의 지분·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 (i) 이들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였다가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 (ii) 이들 투자자의 지분율이 이미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해당 거래로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c) 대상 현지기업이 섬, 육지·해상 국경지역 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LURC)<sup>14)</sup>를 보유하는 경우

### Article 26 Procedures for investment in the form of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purchase of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

2. A foreign investor shall conduct procedures to register its capital contribution to, purchase of shareholding or purchase of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in an economic organization prior to the change of members or shareholders if it belongs to one of the following cases:

- 13) 「투자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회사는 (a)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More than 50% of its charter capital is held by a foreign investor(s), or a partnership has a majority of partners being foreign individuals in the case of an economic organization being a partnership), (b) 위 (a)의 회사가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More than 50% of its charter capital is held by an economic organization(s) prescribed in sub-clause (a) above), (c) 위 (a)의 회사와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More than 50% of its charter capital is held by a foreign investor(s) and an economic organization(s) prescribed in sub-clause (a) above)를 의미
- 14) 한국의 부동산등기필증에 해당한다. 종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었고, 각각의 용지 색깔에 착안하여 속칭으로 토지 증서는 'Red Book', 건물 증서는 'Pink Book'이라 칭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권리증서에 같이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즉, 나대지 상태의 토지사용권증서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등기)되어 발급되었다가, 추후 건물이 건축되고 나면 그 토지사용권증서상에 건물에 관한 사항도 추가 기재(등기)하게 된다.

- (a) The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holding or purchase of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by the foreign investor results in an increase in foreign investor ownership in the economic organization [or] doing business in the market approach industry or trade subject to condition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 (b) The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holding or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results in the foreign investor/s [and/or] economic organization/s as prescribed in sub-clauses (a), (b) and (c) of article 23.1 of this Law holding more than 50% of the charter capital of the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following cases: increasing the ratio of charter capital ownership of foreign investors from 50% or below 50% to more than 50%, or increasing the charter capital ownership of foreign investors who already owned more than 50% of the charter capital in the economic organization;
- (c) The foreign investor contributes capital to or purchases shareholding or purchases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in an economic organization which has a land use right certificate for land on an island or on a coastal or border commune, ward or town or in another area which affects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

4.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file, sequence and procedures for contributing capital to or purchasing shareholding or purchasing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in economic organizations stipulated in this article.

그러나 각 관할지역 기획투자국 실무에 따라, 위 (a), (b) 또는 (c)에 해당하지 않는, 즉,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지분·주식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상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양수도 거래 때도 사전승인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승인 발급을 위해 대상 현지법인 본점 소재지 투자등록증 발급 관할기관(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IRA)<sup>15)</su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Decree 31 제66조 제2항).

15) 「투자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IRA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또는 경제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해당 공단 또는 구역의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그 외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관할 성·중앙직할시의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이 된다.



- (a) 출자 등록 신청서(법정 양식으로, 대상 현지법인 세부 정보 기재<sup>16)</sup>)
- (b) 양수인의 신분 또는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여권 등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대상 현지법인의 기업등록증 등
- (c) 지분·주식양수도에 관한 기초 계약(MOU, 가계약 등), 및
- (d) 대상 현지법인이 섬이나 육지·해상 국경지역 기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증서를 보유한 경우, 그 토지사용권증서

투자등록증 발급 관할기관은 위 서류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a) 「투자법」 제9조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준수 여부, (b) 국가 안보 보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양도인·양수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Decree 31 제66조 제3항). 한편 대상 현지법인이 섬과 육지·해상 국경지역 기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베트남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추가되고, 그만큼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진다(Decree 31 제66조 제4항).

사전승인 발급 후 「기업법」에 따라 지분·주식양수도에 따른 사원·주주 변경 등이 가능하고(즉 지분·주식양수도를 위한 본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은 사전승인 발급 후에 가능),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양수인은 사원·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지니게 된다(Decree 31 제66조 제5항).

**Article 66. Procedures for conducting investment activities by contributing capital, purchasing shares or purchasing stakes applicable to foreign investors**

(...)

2. The business organization in which foreign investors invest in the form of capital contribution, purchase of shares or stakes in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26 of the Law on Investment shall submit 01 set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stakes to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here the business organization's headquarters is located. The application includes:

16) 목적 사업, 사원·창립주주 명단, 양수도 거래 전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양수도 거래가액(예상),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a) A registration form for capital contribution/purchase of shares/stakes, which contains: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the foreign investors expects to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expected to be purchased by the foreign investors; business lines; list of owners, members and founding shareholders, list of owners, members and founding shareholders that are foreign investors (if any); holding of charter capital by foreign investors before and after the capital contribution/purchase of shares/stakes in the business organization; expected transaction value of the contract for capital contribution/purchase of shares/stakes;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organization's investment project (if any);
  - (b) Copies of legal documents of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contributes capital or purchases shares/stakes and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 (c) A principal agreement on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stakes between the foreign investors and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or between the foreign investors and the shareholders or members of such business organization.
  - (d)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land use rights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in the case specified in Point b Clause 4 Article 65 of this Decree).
3. For the cases specified in Points a and b Clause 2 Article 26 of the Law on Investment,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valid appl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for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stakes set out in Clause 2 Article 24 of the Law on Investment and Clause 4 Article 65 of this Decree, and notify the investors, except for the case in Clause 4 of this Article. The notification shall be sent to foreign investors and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4. If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has the certificate of rights to use land on an island or in a border or coastal commune; in a coastal commune; in another area that affect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follow the procedures below:

(a) Within 03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valid application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seek opinion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oint b Clause 4 Article 65 of this Decree.

(b) Within 07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s reques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hall give their opinions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ssurance by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in case of failure to give any opinion by the aforementioned deadline, it is considered that it concurs with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ssurance by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c)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valid application,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for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stake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24 of the Law on Investment and Clause 4 Article 65 of this Decree, and notify investors according to the opinions given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e notification shall be sent to foreign investors and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5. After foreign investors are granted the approval for capital contribution or purchase of shares or stakes as prescribed in Clauses 3 and 4 of this Article, the business organization to which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or whose shares/stakes are purchased by foreign investors shall follow procedures for change of members or shareholders at the business registr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law on enterprises and other law corresponding to each type of business organization.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eign investors that act as members or shareholders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s for change of members or shareholders.

### 3.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절차 및 유의 사항

#### 가. 지분·주식의 가치평가

베트남 법령은 지분·주식 평가 방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분·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지분·주식을 평가·합의할 수 있다.<sup>17)</sup>

#### 나. 지분·주식 양도 인허가 및 양수도계약 체결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양수도를 위해서는 위 '1. 2.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양도 제한' 부분에서 설명한 제약 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현지법인의 본점 소재지 기획투자국으로부터 다음 순서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① 사전승인은 양수인이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 또는 내자 기업인 경우에는 불필요하다.<sup>18)</sup>

- ① 지분·주식양수도 사전승인
- ② 지분·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양수도대금 지급
- ③ 현지법인의 기업등록증 변경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양수도 거래에 수반하여 회사 상호, 대표자, 자본금 등을 변경할 경우에 기업등록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주주만 변경 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 ④ 현지법인의 투자등록증 변경

위 ②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허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다.<sup>19)</sup>

원칙적으로 위 ① 지분·주식양수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후 양수도 거래를 진행하고, 해당

17) 베트남 「민법(Civil Code)」제433조 제1항에 따르면, 가격과 대금지급방법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정할 수 있다.

18) 단, 위 '1. 2. 나. (2)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투기업인 경우의 사전승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법상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양수도 거래 때도 지분양수도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 각 인허가의 법정 소요 기간은 ① 사전승인의 경우 15일(Decree 31 제66조 제3항), ② 기업등록증 변경의 경우 3 영업일(「기업법」 제30조 제3항), ③ 투자등록증 변경의 경우 15일(「투자법」 제38조 제1항 (b)호)이나, 실무상 제출한 서류의 보완명령 등으로 인하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거래에 따른 사원/주주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기업등록증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사원·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Decree 31 제66조 제5항). ② 양수도계약은 ① 사전승인 이후의 날짜로 체결하고, ③ 기업등록증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거래 실무상 위 ① 사전승인 발급일보다 먼저 양수도계약에 서명하되, 체결일은 공란으로 비워 두었다가 사전승인 이후의 날짜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Q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베트남 법인의 설립 인허가로는 한국의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이 있다. 즉 기업등록증을 받음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기업등록증을 받기에 앞서 먼저 외국인 투자승인 성격의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도 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증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및 이들의 출자 자본금과 지분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유의할 것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창립 사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등 설립 후에 지분을 취득한 사원도 모두 명시되지만, 주식회사는 창립주주만 명시될 뿐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명시되지 않는다. 한편 투자등록증에는 외국인 투자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창립 사원·주주뿐만 아니라 설립 후 지분·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모두 명시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업등록증에 양수인이 사원으로 명시(등록)됨으로써 「기업법」상 사원(지분 보유자)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에 주주 변경을 반영하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주권을 교부받고(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한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명의개서)함으로써 「기업법」상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에도 양수인이 투자자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먼저 기업등록증 변경등록(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주식회사)로써 「기업법」에 따른 사원·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고, 이후 투자등록증 변경등록으로써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 지분·주식 양도 인허가 및 대금 지급

양수도대금은 ① 사전승인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③ 기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할 때 은행 송금 증 등 양수도대금 지급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sup>20)</sup>

외투기업의 지분·주식을 양수도 하는 대금의 통화 및 지급 방법은 베트남 중앙은행 2019. 6. 26. 발령, 2019. 9. 6. 시행 Circular No. 06/2019/TT-NHNN(이하 ‘Circular 06’)에 의해 규율되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이 베트남 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어느 한 당사자가 베트남 거주자이면 양수인은 먼저 대상 현지법인의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sup>21)</sup>에 베트남 동화로 송금하고, 여기에서 다시 양도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Circular 06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즉,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한 명이라도 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수인 계좌 → 현지법인의 직접투자계좌 → 양도인 계좌로 송금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다른 한국 기업에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로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 또는 베트남 개인과 같은 베트남 거주자에게 지분·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상 현지법인의 직접투자계좌에 베트남 동화로 양수도대금을 송금하고, 대상 현지법인이 직접투자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양도인에게 송금해야 한다.

양도인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양수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점이 생소할 수 있으나,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지분·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징수 편의와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sup>22)</sup>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0) 단, 관할 기획투자국 실무에 따라 양도인이 작성한 양수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있다.

21) Circular 06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직접투자계좌란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 외투기업 등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외화 계좌 또는 베트남 동화 계좌를 의미한다.

22) 베트남에는 한국 법상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와 같은 별도의 외국환거래 신고 제도가 없다.

### Article 10 Assignment of investment capital and of the investment project

1 Payment of the value of an assignment of shares or of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in an FDI enterprise defined in article 3.2 of this Circular is implemented as follows:

(a)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wo] investors both being non-residents or between the investors both being residents is not required to be made via a DICA;

(b) [The transaction] between an investor being a non-resident and an investor being a resident is required to be made via a DICA.

(...)

3 The currency for valuation [and] payment of the value of an assignment of capital contribution or of the investment project during FDI activities in Vietnam:

(a) The valuation and payment of the value of an assignment of capital contribution or of the investment project between two non-residents is made in foreign currency;

(b) The valuation and payment of the value of an assignment of capital contribution or of the investment project between a resident and a non-resident, or as between residents is made in VND.

## 라. 조세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 1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권은 베트남에 있다.<sup>23)</sup>

이때, 양수도 대상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의 지분양수도거래에 따른 조세, 주식회사인 경우의 주식양수도거래에 따른 조세는 각각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인에게 20%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즉 한국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한 가격에서 최초 지분 취득가격(자본금 출자금액)을 뺀 차익의 20%를 지분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

23) 종전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라면 한국인 투자자가 지분·주식을 양도한 수익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신고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2021. 1. 20. 발효된 조세조약 개정 협약에 따라, 지분·주식을 15% 이상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권이 베트남에 있게 되었다.

인 경우, 양수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때 위 자본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양수도 대상 현지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식회사의 주권(주식) 양도 시, 양도인이 한국인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1%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양도인이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세와 동일하게 양도 차익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구조조정 가이드북

베트남

GUIDE



# III



##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Q&A]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37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37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46
[사례]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51
[사례]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55
[Q&A]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56
3. 자산 매각 후 휴업	57
[Q&A]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61

## III

## 현지법인의 자산 매각과 휴업

앞서 설명한 지분·주식양수도의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업과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 입장에서는 대상 회사의 부채 등도 모두 이전되는 결과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하는 양수인은 베트남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요 자산만을 양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베트남에는 영업용 자산과 영업 자체를 일체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제도가 없으므로 자산과 사업을 각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양수도해야 한다. 그리고 양수인은 해당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관할기관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이 그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계약관계를 이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식회사인 경우) 또는 사원총회(Members' Council, 유한책임회사인 경우)<sup>24)</sup>의 결의를 거쳐 개별 자산에 관해 양수도계약을 체결·이행하되, 토지·건물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변경 등록(등기)을 해야 하고, 건물 등의 임대차계약과 사업계약 등 주요 계약을 해지 또는 이전해야 하며,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한다. 양수인 등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기존 사원이나 주주 등 현지법인의 이해관계인(Related person)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도 주주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각 승인 결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지법인은 주요 자산을 이전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거라면,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중단하기 위하여 자산양수도 전후에 먼저 휴업 신고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지법인을 해산하여 투자자인 한국 기업에게 잔여자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법인의 자산 양도 후 이익배당 또는 청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거래 즉시

24)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사원(사원이 단체일 경우에는 그가 선임한 수권대리인)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기업법」 제55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응한다. 한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특별히 구성하지 않았다면 단 일 소유주(Owner, 즉, 1인 사원을 의미함)의 결정이 사원총회 결의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분·주식양수도보다 불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Q 자산 매각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방법?

**A** 자산 매각 후 현지법인을 바로 청산하지 않고, 현지법인의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자산 매각 대금을 배당수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법」은 주식회사의 중간배당은 허용하지 않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배당 결의를 할 수 있다.<sup>25)</sup>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기업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주식회사와 달리 중간배당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한 결의서와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부증명서를 거래 은행에 제시하면 현지법인의 직접투자계좌에서 투자자에게로 배당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 비거주자인 한국인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1. 주요 자산 매각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자산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와 주식회사인 경우, 각 내부 결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한국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가 단독 사원(이를 ‘Owner’라 칭함)으로서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기업법」 제76조 제1항 (e)호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50% 이상<sup>26)</sup>의 가치를 지는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소유주(Owner, 1인 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25) 「기업법」 제135조 제4항은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연간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Dividends must be paid in full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losing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26) 회사의 정관으로 더 낮은 자산가액 기준을 정한 경우, 그를 적용해야 한다.

### Article 76 Rights of company owner

1. A company owner being an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rights:

(...)

(e) To approve loan agreements, contracts for sale of assets and other contracts as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valued at fifty (50)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assets record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or a smaller percentage or value as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

양수인 등 해당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가 (a) 소유주, 소유주의 이해관계인, (b) 사원총회의 구성원, 회장, 사장 또는 감사, (c) 위 (b)의 이해관계인, (d) 회사의 관리자(Manager)<sup>27)</sup> 또는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 자, 또는 (dd) 위 (d)의 이해관계인 등인 경우에 해당 거래 또는 그를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원총회<sup>28)</sup>, 회장(Chairman), 사장(General director 또는 Director)<sup>29)</sup>과 감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하되(거래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자는 해당 승인 시 의결권이 없음), 양수도대금은 해당 계약 체결 시 또는 거래 이행 시 기준의 시장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기업법」 제86조 제1항 및 제4항 (b)호). 소유주는 해당 거래·계약이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기업법」 제86조 제4항 (c)호).

해당 거래 또는 계약은 베트남 법원이 「기업법」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무효가 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서명인) 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를 보상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기업법」 제86조 제5항).

27) 관리자란 사원총회 구성원, 회장, 이사회 구성원, 사장 기타 회사의 정관상 회사의 관리 직급에 있는 자(개인)를 의미한다(「기업법」 제3조 제24항).

28) 소유주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서 3인 내지 7인의 수권대리인으로 사원총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를 대신하여 회장 1인을 둘 수도 있다. 수권대리인 또는 회장은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기업법」 제79조 내지 제81조). 즉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현지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수권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수권대리인을 복수로 선임할 경우에는 이들로 사원총회라는 회의 기구를 구성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수권대리인을 1인(이를 '회장(President)'라고 칭함)만 선임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임된 회장이 단독으로 소유주를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29) 사장은 사원총회 또는 회장이 회사의 일상적 경영을 위하여 선임한 자를 의미한다.

### Article 86 Contracts and transactions of company with related persons

1.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any contract or transaction between a single member LLC owned by an organization and the following persons must be approved by the Members' Council or the chairman of the company,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inspectors:
  - (a) The company owner and a related person of the company owner;
  - (b) A member of the Members' Council, the chairman of the company,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the inspectors;
  - (c) A related person of the persons stipulated in sub-clause (b) of this clause;
  - (d) A manager of the company owner, the person authorized to appoint such manager;
  - (dd) A related person of the persons stipulated in sub-clause (d) of this clause.
2. The pers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r transaction in the name of the company must notify the Members' Council or the chairman of the company,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the inspectors of related entities and related interests in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and enclose the draft of such contract or main contents of such transaction.
3.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members of the Members' Council or the chairman of the company,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inspectors must make a decision approving the contract or transaction within te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n the principle of majority. Each person has one vote. Persons related to the parties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4. The contract or transaction stipulated in clause 1 above may be approved only upon satisfaction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e parties entering into the contract or performing the transaction are independent legal entities with separate rights, obligations, assets and interests;
  - (b) The price used in the contract or transaction is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or when the transaction is performed;
  - (c) The company owner complies with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77.4 of this Law<sup>30)</sup>.

30) "Obligations of company owner is to comply with the law on contracts and other relevant laws with respect to any purchase, sale, borrowing, lending, lease or rental and other contracts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owner."

5. A contract or transaction shall be void pursuant to a decision of a court and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law where it is not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The signatories to the contract or transaction and related persons be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transaction must be jointly responsible for any loss arising and for returning to the company any benefit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6. A contract or transaction between a single member LLC owned by an individual and the company owner or a related person of the company owner must be recorded and retained as a separate file of the company.

## ②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한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기업법」 제59조 제3항 (b)호에 따라,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50% 이상의 가치를 지는 자산<sup>31)</sup>을 양도하는 계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출석 사원 75% 이상의 찬성)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정관으로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가중의결정족수 75%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Article 59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Members' Council

(...)

3.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does not stipulate another percentage, a resolution or decision of the Members' Council is [deemed] passed in a meeting in the following cases:
  - (a) It is agreed by the attending members who own sixty-five (65) per cent or more of the aggregate contributed capital of all attending members,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in sub-clause (b) below;

31) 회사의 정관으로 더 낮은 자산가액 기준을 정한 경우, 그를 적용해야 한다.



(b) Agreement by the attending members who own seventy-five (75) per cent or more of the aggregate contributed capital of all attending members is required for resolutions and decisions relating to the sale of assets valued at fifty (50)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record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 of the company, or a smaller percentage or value as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and] for amendment of and addition to the charter of the company, or for re-organization or dissolution of the company.

(...)

양수인 등 해당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가 (a) 사원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sup>32)</sup>, 사장 또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 (b) 위 (a)의 이해관계인, (c) 모회사의 관리자 또는 모회사의 관리자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 자, 또는 (d) 위 (c)의 이해관계인 등인 경우에 해당 거래 또는 그를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래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원은 해당 승인 시 의결권이 없다. 「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 거래 또는 계약은 베트남 법원이 「기업법」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 하는 경우에 무효가 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서명인) 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를 보상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기업법」 제67조 제3항).

#### Article 67 Contracts and transactions which must be approved by Members' Council

1. A contract or transaction between the company and the following entities must be approved by the Members' Council:

(a) A member or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a member;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or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32) 수권대리인은 기업의 주주(주식회사의 경우)나 사원(유한책임회사의 경우)이 자연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단체를 대리하여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나 사원총회(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을 의미한다(「기업법」 제14조 제1항).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리인을 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직전에 위임장을 주어 선임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베트남 「기업법」은 상시적으로 수권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권대리인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 (b) A related person of any person prescribed in sub-clause (a) above;
- (c) A manager of the parent company, [or] a person authorized to appoint managers of the parent company;
- (d) A related person of any person prescribed in sub-clause (c) above.
2. The person entering into a contract or transaction in the name of the company must send to the members of the Members' Council [and/or] inspectors a notice of related entities and related interests in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and must enclose the draft contract or the main contents of the transaction intended to be conduct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the Members' Council must make a decision approving or not approving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and comply with article 59.3 of this Law. Any member of the Members' Council related to the parties in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may not be included for voting.
3. A contract or transaction shall be void pursuant to a decision of a court and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law where it is entered into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clause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signatory of the contract or transaction, the interested member and the related persons of such member involved in the contract or transaction must compensate for any loss arising and return to the company any benefits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 ③ 주식회사인 경우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이사회(Board of Management)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sup>33)</sup>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35% 이상<sup>34)</sup>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의 경우에 「기업법」 제148조 제1항 (d)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산 양도 외에 구매, 판매, 차입 기타 계약으로 거래 금액이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35%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법」 제153조 제2항 (h)호에 따라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의 승인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

33)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3인 내지 11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기업법」 제137조 제1항).

34) 회사의 정관으로 자산가액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 그를 적용해야 한다.

주주 보유 주식의 6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회사의 정관으로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가중의결정족수 65%를 달리 정할 수 있다.

**Article 148 Conditions for passing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A resolution on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passed if it is agreed by a number of shareholders representing sixty-five (65)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lips of all attending shareholders, except in the case prescribed in clauses 3, 4 and 6 below; the specific percentage shall be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

(d) Investment project or sale of assets valued at thirty-five (35)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record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except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stipulates some other percentage or value;

(...)

**Article 153 Board of Management**

1. The Board of Management is the body managing the company and has full authority to make decisions in the name of the company and to exercise the rights and perform the obligations of the company, except for those within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2. The Board of Management has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

(h) To approve contracts for purchase, sale, borrowing, lending and other contracts and transactions valued at thirty-five (35)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record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except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stipulates some other percentage or value, and contracts and transactions within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stipulated in clause 2(d) of article 138 and clauses 1 and 3 of article 167 of this Law

(...)

양수인 등 해당 양수도 거래의 당사자가 (a) 보통주식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요 주주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또는 그들의 이해관계인, (b) 이사, 사장 또는 그들의 이해관계인, 또는 (c) 이

사, 감사, 사장 또는 다른 관리자가 지분·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로서 「기업법」 제164조 제2항<sup>35)</sup>에 따라 공개된 회사 등인 경우, 해당 거래 또는 그를 위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래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또는 주주는 해당 승인 시에 의결권이 없다. 「기업법」 제16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구체적으로는 해당 양수도 거래 또는 계약이 회사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35% 미만<sup>36)</sup>의 가치를 지닌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이 필요하고, (a) 이사회에 승인 대상인 거래·계약 외의 거래·계약이나 (b)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총 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거래·계약이라도 의결권이 있는 주식 5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과의 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당 거래 또는 계약은 베트남 법원이 「기업법」 제16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무효가 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서명인), 해당 거래와 관련이 있는 주주, 이사 또는 사원은 연대하여 해당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기업법」 제167조 제5항).

#### **Article 167 Approval of contracts and transactions between company and related persons**

1.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the Board of Management shall approve contracts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following related persons:

- (a) Shareholders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being organizations holding more than ten (10) per cent of the ordinary shares of the company, and their related persons;
- (b)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their related persons;

35)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inspectors,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other managers of the company must declare their relevant interests to the company, including: (a) Names, enterprise code numbers, head office addresses, business lines of enterprises in which they are owners or own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or shares; ratio of such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or shares and time in which they became owners or owned such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or shares; (b) Names, enterprise code numbers, head office addresses, business lines of enterprises in which their related persons are owners or jointly own or separately own a capital contribution portion or shares of more than ten (10) per cent of charter capital."

36) 회사의 정관으로 더 낮은 자산가액 기준을 정한 경우, 그를 적용해야 한다.

(c) Enterprises to be declared by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inspectors,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and other managers of the company as stipulated in article 164.2 of this Law.

2. Any contract or transaction stipulated in clause 1 above and valued at less than thirty-five (35)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record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or a smaller percentage or value as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shall be approved by the Board of Management. In this case, the person representing the company to sign the contract or transaction must notify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and/or inspectors of entities involved in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and enclose the draft of the contract or main contents of the transaction. The Board of Management shall make a decision on approval of the contract or transac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except where the charter of the company stipulates some other time-limit;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with interests relating to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transaction shall not have the right to vote.

3.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approve the following contracts and transactions:

- (a) Contracts and transaction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 (b) Contracts for and transactions of borrowing, lending or sale of assets valued at more than ten (10) per cen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of the enterprise stated in the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owning fifty-one (51) or more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hares or their related persons.

4. Where a contract or transaction is approved in accordance with clause 3 above, the person representing the company to sign the contract or transaction must notify the Board of Management and inspectors of entities involved in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and enclose the draft contract or the notice of main contents of the transaction. The Board of Management shall submit the draft contract or transaction or explai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or transac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collect written opinions from shareholders. In such case, shareholders with interests relating to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transaction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contract or transaction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1 and 4 of article 148 of this Law,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5. Contracts and transactions shall be invalid pursuant to a decision of a court and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law if they were sign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person signing the contract or transaction, shareholders,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or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concerned must jointly compensate for the loss caused and must return to the company any benefits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contract and transaction.
6. The company must publicize relevant contracts and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 2. 부동산 양수도 시 유의 사항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 인민이 소유하며, 정부는 그를 대리하여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한다(「토지법」 제4조). 즉 사인(私人)은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라는 한시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 Article 4 Ownership of land

Land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with the State as the representative owner and is under uniform management by the State. The State grants land use rights to land users in accordance with this Law.

토지사용권자의 범위, 각 토지사용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의 내용과 토지사용권의 양수도 절차 등은 「토지법」을 따른다.

부동산 중 건물 등 토지에 부착된 자산(Assets attached to land, 이하 총칭하여 '건물'<sup>37)</sup>은 토지와는 달리 사적 소유가 허용되나, 건물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베트남 「부동산사업법」(Law on Real Estate Business, 이하 「부동산사업법」<sup>38)</sup>에 따라 제한된다.

37) 「토지법」은 토지에 부착된 자산(Assets attached to land)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주택(Residential housing)과 그 외 자산(Other assets attached to land)으로 구별한다.

38) 베트남 국회 2014. 11. 25. 의결, 2015. 7. 1. 발효 Law No. 66/2014/QH13으로, 베트남 국회 2020. 6. 17. 의결, 2021. 1. 1. 발효 Law

특히 외국인과 외투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및/또는 건물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법」과 「부동산사업법」상 제약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가. 부동산 양수도 요건

베트남 현지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사용권과 건물 등을 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법인 설립과 양수도 방식

토지사용권자(Land user)란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 받거나, 「토지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받은 자로서, 그 자격 요건은 「토지법」 제5조에 열거된 자로 한정된다. 외투기업은 토지사용권자가 될 수 있으나(「토지법」 제5조 제7항), 외국인(단체 또는 개인)은 「토지법」 제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토지법」 제169조 제1항 (b)호는 기존 토지사용권자로부터 직접 토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경제단체, 가계와 개인으로 한정하면서, 외투기업을 제외한다.<sup>39)</sup>

종합하면, 외국인은 직접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고, 베트남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현지법인이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사용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은 외투기업이 되므로 직접 기존 토지사용권자(양도인)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 수는 없다. 외투기업인 양수인은 기존 토지사용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기존 토지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먼저 베트남 정부에 반환하도록 한 후<sup>40)</sup> 정부로부터 해당 토지를 다시 할당·임대 받아야 한다(이른바 ‘3각 거래’).

No. 61/2020/QH14로 일부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물 중 주택의 경우는 베트남 「주택법(Law on Residential Housing)」이 우선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39) 「토지법」 제3조 제27항에 따르면, 경제단체(Economic organizations)에서는 외투기업(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capital)이 제외된다. "Economic organizations comprise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prescribed in the civil law, excluding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capital."

40) 기존 토지사용권자의 토지 반환은 「토지법」 제65조 제1항 (c)호를 참고

위 3각 거래는 ① 양도인과 양수인 간 보상계약, ② 양도인이 토지사용권을 베트남 정부에 반환, ③ 베트남 정부와 양수인 간 토지임대계약을 각 체결·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관련 행정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돌발 변수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할당·임대할 때에는 경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찰경쟁을 거쳐야 하므로, 외투기업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보상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정부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으면 정부가 반환 받은 토지를 경매에 부칠 위험이 있다.

## (2) 토지임대료 납부 유형에 따른 양수도 범위

「토지법」은 토지사용권자가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이하 총칭하여 ‘토지임대료’)를 일시납하였는지, 연납하는지를 기준으로 토지사용권의 내용을 제한한다.

토지임대료를 일시납한 외투기업은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 건물을 모두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해당 토지사용권의 잔여 기간동안 토지사용권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반면 토지임대료를 연납하는 외투기업은 그 지상 건물만을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토지법」 제183조 제2항 (c)호, 제183조 제3항 (b)호). 양도인이 토지임대료를 연납하고 있어 그 지상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토지사용권의 잔여 토지사용기간동안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양도인과 동일한 조건(임대료 등)으로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토지법」 제189조 제3항)<sup>41)</sup>.

따라서 형식적으로 토지가 양수도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양수인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41) “Purchasers of assets are permitted to continue to lease land from the State for the remainder of the land use term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land prices and must use land for correct purposes as determined in the project.”



**Article 183 Rights and obligations of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using land for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in Vietnam**

(...)

2.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eing leased land by the State of Vietnam with collection of annual rent**,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

(c) To **sell assets owned by them attached to the leased land** upon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189 of this Law;

(...)

3.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eing leased land by the State of Vietnam with collection of one-off payment of land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eing allocated land by the State of Vietnam with collection of land use fee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projects,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

(b) To **assign the land use right and assets owned by them attached to the land during the land use term**;

(...)

대상 토지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이하 총칭하여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토지법」 제185조 제2항). 다만 이 경우, 공단 입주기업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로부터 공단 내 토지를 전차하는 형식이 된다.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일시납한 공단 개발사업자는 입주기업에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연납 또는 일시납 중 선택하여 전대할 수 있는 반면,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연납하는 공단 개발사업자는 입주기업에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연납하는 조건으로만 전대할 수 있다(「토지법」 제149조 제2항<sup>42)</sup>. 따라서 공단 개발사업자도 정부에 토지임대료

42) “The State shall lease land to economic organizations,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o invest, construct and commercially operate infrastructure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With respect to that area of land which is leased with payment of annual rent, the person to whom the State leases land shall have the right to sublease the land in the form of payment of annual rent; and with respect to that area of land which is leased with one-off payment of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the person to whom the State leases land shall have the right to sub-lease the land either in the form of one-off payment of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or in the form of payment of annual rent.”

를 일시납하고, 입주기업도 개발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일시납한 경우에만 해당 입주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양도, 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Article 185 Rights and obligations of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using land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export processing zones, high-tech zones and economic zones**

(...)

2.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leasing or sub-leasing land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export processing zones, high-tech zones and economic zones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a) In the case of one-off payment of land rent for the entire term of the lease or sub-lease, they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174 of this Law;

(b) In the case of payment of annual land rent, they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article 175 of this Law.

(...)

**Article 174 Rights and obligations of organizations to which the State allocates land with collection of land use fees or to which the State leases land with collection of one-off payment of land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

2. Economic organizations to which the State allocates land with collection of land use fees or leases land with collection of one-off payment of land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shall, in addition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have the following rights:

(a) To assign the land use right and assets owned by them attached to the land;

(...)

**Article 175 Rights and obligations of economic organizations and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using leased land with payment of annual rent**

1. Economic organizations and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to which the State leases land with collection of annual land rent have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

(c) To **sell assets owned by them attached to the leased land** upon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189 of this Law; the State shall continue to lease the land for the determined purpose to purchasers of the assets;

(...)

한편, 공단 내 토지는 공단 개발사업자로부터 전차한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엄밀히는 전대차계약(Land Sub-lease Agreement)상 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전대인인 공단 개발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단 개발사업자에 따라, 전차권 양도에 순순히 동의하는 곳도 있는 반면, 동의 조건으로 거래대금의 3% 전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공단 내 토지를 양수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단 개발사업자가 전차권 양도에 동의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례**

**[사례] 공단 내 공장을 양도한 사례**

한국 투자자(甲)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乙)이 공단 내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던 중 토지와 건물 및 설비, 근로계약관계를 다른 한국 투자자(丙)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현지법인(乙)은 공단에 임대료를 일시납하였지만, 공단 개발사업자는 정부에 자신의 토지임대료를 연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43)</sup>

43) 현행 토지법은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한 공단 개발사업자만 입주기업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받을 수 있고,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연납하는 공단 개발사업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연납받는 조건으로만 전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토지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에 토지임대료를 연납하는 공단 개발사업자도 입주기업에게 전대한 토지의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수인 측(丙)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우선 양도인(乙) 및 공단 개발사업자와 3자 간에 토지전대차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MOU)를 체결한 뒤, 이를 제출하여 현지법인(丁)을 먼저 설립(IRC 및 ERC 취득)하였다.

이후 양수인 측 현지법인(丁)이 양도인(乙)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건물과 설비 등을 양수하였고, 양도인(乙)은 공단 개발사업자와 기존 토지전대계약을 해지한 뒤, 양수인(丁)이 공단 개발사업자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토지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양도인(乙)은 청산 신고를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들은 양도인(乙)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양수인(丁)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외투기업이 양수한 부동산의 임대 제한

「부동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부동산사업이란 부동산을 건축, 구매, 인수하여 판매, 양도, 임대, 전대하는 영위 활동을 의미한다. 이 외에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소, 부동산자문업, 부동산관리업도 부동산사업에 포함된다(「부동산사업법」 제3조 제1항).

한편 외투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부동산사업법」 제11조).

- ①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
- ② 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건축하여 판매, 임대
- ③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 임대
- ④ 건물 건축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건축한 건물의 판매, 임대
- ⑤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임차 또는 양수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사용목적에 부합하게 거래

내자기업과 차이가 나는 점은, 외투기업은 임차한 건물을 전대할 수는 있지만, 매수한 건물을 임대할 수는 없다. 즉 외투기업이 직접 개발, 건축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전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단을 개발하여 공단 토지를 전대할 수는 있지만, 공단이 아닌 일반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전대할 수는 없다.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만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are construed as follows:

1. Real estate business means investment of capital in order to implement construction, purchase, receipt of a transfer of in order to sell or transfer; to lease out or sub-lease out or grant a hire purchase of real estate; to carry out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trading floor services; real estate consultancy or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for profit-making purposes.

(...)

**Article 11 Scope of real estate business applicable to domest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enterprises with foreign owned capital**

1. Domest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permitted to conduct real estate business in the following forms:
  - (a) To purchase houses and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b) To lease houses and buildings for sub-leasing out;
  - (c) In the case of land allocated by the State,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houses for the purpose of sale, for lease out or for grant of hire purchase; to transfer the land use right in the form of division of land into plots for sal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land; and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f cemeteries and graves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f land use right attached to such technical infrastructure;
  - (d) In the case of land leased from the State,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houses for the purpose of lease out; and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other than residential houses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dd) In the case of land in respect of which the land use right is recognized by the State,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e)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on the land received as a transfer from organizations, family households or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g)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on the land leased from organizations, family households or individuals, for leasing out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nd use purposes;
  - (h) To receive transfer of a part of or entire real estate projects from investors in order to construct houses and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i) To receive transfer of or to lease land use rights from organizations, family households or individuals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lease out of land with such technical infrastructure.
2.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re permitted to conduct real estate business in the following forms:
- (a) In the forms stipulated in clauses 1(b), 1(d), 1(g) and 1(h) of this article;
  - (b)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houses on land allocated by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sale, lease out or grant of hire purchase;
  - (c)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on the transferred or leased land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export processing zones, high tech zones or economic zones for trading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nd use purposes.
3. Enterprises with foreign owned capital are permitted to conduct real estate business in the following forms:
- (a) In the forms stipulated in clauses 1(b), 1(d), 1(h) and 2(b) of this article;
  - (b) To invest in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buildings on the leased land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export processing zones, high tech zones or economic zones for trading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nd use purposes.

## (1) 외투기업이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의 임대 제한

외투기업의 부동산 사업 범위에 '건물을 구매하여 판매·임대'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내자기업의 사업 범위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외투기업의 사업 범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외투기업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보유한 기존 건물을 양수해서 이를 활용하여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은 통상 건물을 직접 매수하는 대신에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등의 대안을 선택해야 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사례

#### [사례]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 사례

여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내자기업이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 건물을 매수하고자, 먼저 내자기업이 해당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한국 투자자가 그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한국 투자자는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내자기업으로부터 자회사 지분을 직접 양수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정확히는 외투기업)가 기완공된 건물을 매수해서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 내자기업이 해당 건물을 보유·운영하는 부동산사업부를 분리하여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인적 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그러한 우발 채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물출자 형식을 취하였다. 현물출자와 같은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물적 분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베트남 「기업법」은 물적 분할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2) 외투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양수하는 경우의 임대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전대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부동산사업법」상 외투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토지법」은 정부가 경제단체, 재외 베트남인, 외투기업에 토지를 임대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149조 제2항)<sup>44)</sup>. 위 규정의 해석상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자체를 전대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 Q 토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A** 한국의 부동산등기처럼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이전, 담보 설정 등 처분행위는 토지사용권증서라는 권리증서에 기재(등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토지등기와 건물등기가 분리되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토지사용권증서에 지상 건물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하여 관리한다. 토지사용권을 양수도하여 토지사용권자가 변경될 경우, 성·중앙직할시 자연환경국(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에서 발급한 토지사용권증서를 변경해야 하며, 이것이 변경 등기에 해당한다.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증서 변경 신청 양식, 토지사용권 양수도계약서, 기존 토지사용권증서 원본 등을 자연환경국에 제출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증서 변경 발급은 제반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등기 신청을 위해 제출하기에 앞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양수인(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베트남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장을 날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44) “The State shall lease land to economic organizations, Vietnamese residing oversea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to invest, construct and commercially operate infrastructure in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and export processing zones. With respect to that area of land which is leased with payment of annual rent, the person to whom the State leases land shall have the right to sublease the land in the form of payment of annual rent; and with respect to that area of land which is leased with one-off payment of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the person to whom the State leases land shall have the right to sublease the land either in the form of one-off payment of r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or in the form of payment of annual rent. Investors are entitled to an exemption of land rent for the areas of land on which they have constructed common infrastructure for industrial zones, industrial complexes or export processing zones.”



### 3. 자산 매각 후 휴업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현지법인은 중국적으로는 해산해야 할 것이다. 현지법인 해산을 위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의 세금 완납 확인(세무조사) 과정에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양수도 전후 대외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일단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상태에서 양수도 거래를 이행하며, 잔여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IV. 현지법인 해산(청산)' 부분을 함께 참고)

#### 가. 휴업 요건 및 신고

외투기업의 존속과 운영에 관해, 법인 설립·운영 측면에서는 「기업법」이, 사원·주주 등 투자자의 투자 활동 측면에서는 「투자법」이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휴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투자자는 「투자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 (1) 「기업법」상 회사의 휴업 요건 및 신고

「기업법」 제206조 제1항<sup>45)</sup>에 따르면, 휴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휴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3 영업일 이전에 기획투자국 산하 기업등록소에 서면으로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등록에 관한 베트남 정부 2021. 1. 4. 공포·발효 Decree No. 01/2021/ND-CP(이하 'Decree 01')에 따르면, 1회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한 휴업 기간 이후에도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초 휴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 영업일 이전에 별도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Decree 01 제66조 제1항).

휴업 신고 시, 해당 기업의 휴업에 관해 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소유주의 결정문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결의서를,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Decree 01 제66조 제2항). 정관에서 휴업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달

45) "An enterprise must notify the BRO in writing no later than three working days before the date of temporary suspension of its business or resumption of its business prior to the notified time-limit."

리 정하지 않았다면, 휴업에 관한 사항은 일반 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의 경우 출석 사원의 65%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고(「기업법」 제59조 제3항 (a)호), 주식회사 이사회회의 경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기업법」 제157조 제12항)이, 주주총회의 경우 출석 주주 지분율의 과반수 찬성(「기업법」 제148조 제2항)이 필요하다.

#### **Article 66. Registration of business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business ahead of schedule**

1. When **an enterprise** or its branch/representative office/business location **suspends its business** or resumes its business ahead of schedule, **the enterprise shall send a notification to the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of province** where the enterprise or its branch/representative office/business location is located **at least 03 days before the planned date of suspension** or resumption. If the enterprise or its branch/representative office/business location is still suspended after the notified suspension period, another notification must be sent to the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at least 03 days before the planned date of suspension. **Each notified suspension period must not exceed one year.**
2. In case of business suspension, **the notification must be enclosed with the resolution or decision and the copy of the minutes of meeting of the Board of Members of the multi-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partnership, o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joint-stock company**, or **the resolution or decision of the owner of the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n business suspension.**

(...)

## **(2) 「투자법」상 투자자의 휴업 요건 및 신고**

외투기업의 사업은 「투자법」에서 정한 투자 프로젝트(Investment project)에 해당하므로, 「투자법」 제47조 제1항<sup>46)</sup>에 따라 각 투자자(사원 또는 주주)는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을 기획투자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휴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Decree 31 제56조 제2항, 단, 법

46) "An investor which suspends the operation of its investment project must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IRA. In the case of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due to force majeure, the State shall allow the investor to be exempt from land rent [or] shall reduce land use fees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the operation in order to remedy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force majeure event."

원의 판결, 중재판정, 관할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휴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휴업 결정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기획투자국에 휴업 신고를 해야 하고, 기획투자국은 휴업 신고 접수 후 휴업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Decree 31 제56조 제3항 (a)호).

**Article 56.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suspension of investment projects**

1. An investment project shall be suspended in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s 1, 2 and 3 Article 47 of the Law on Investment.
  2. **The total period of suspension of an investment project shall not exceed 12 months.** If the investment project is suspended according to a court’s effective judgment or decision, effective arbitral award or investment authority’s decision, the suspension period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urt’s judgment or decision, effective arbitral award or investment authority’s decision. If these documents do not specify the suspension period, the total suspension period shall not exceed the period prescribed in this Clause.
  3. Suspens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 (a) **If the investor decides to suspend the investment project himself/herself/itself** as prescribed in Clause 1 Article 47 of the Law on Investment, such investor **shall send a notification to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within 0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the decision.**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shall receive the notification and notify the project suspension to relevant authorities;
- (...)

**나. 휴업 중 채무의 이행 등**

회사가 기업등록소에 휴업 신고를 하면, 기업등록소는 필요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심사한 뒤 휴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사의 법적 상태를 ‘휴업’으로 변경한다(Decree 01 제66조 제3항 및 제4항). (휴업 중 채무 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참고)

**Article 66. Registration of business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business ahead of schedule**

(...)

3.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enterprise registration, **the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shall give a confirmation slip, examine the validity of received documents, and **issue a certification that the enterprise** or its branch/representative office/business location has registered the business suspension or resumption of business ahead of schedule **within 03 working days from the receipt of satisfactory documents.**

4. When the enterprise applies for registration of business suspension, **the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shall change the enterprise's legal status** and status of its branches/representative offices/business locations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Database to "business suspension".**

(...)

**(1) 잔여 근로계약의 해소**

회사와 채권자, 고객, 근로자 등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휴업 기간 중에도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존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기업법」 제206조 제3항)<sup>47)</sup>.

현지법인은 주요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근로자 승계 여부와 범위 등을 협의할 것이다. 양수인이 승계하는 근로자에 대해 양도인은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외 근로자의 경우, 주요 자산 양도 이후에는 특별히 근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면, 양도인은 해당 근로관계를 해소(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 노동법」(Labour Code, 이하 「베트남 노동법」)<sup>48)</sup>상 회사의 휴업은 근로계약 종료 사유

47) "During the period of any temporary suspension of business, the enterprise must pay any outstanding taxes,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must continue to pay other debts and must complete performance of contracts signed with customers and employe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enterprise, creditors, customers and employees."

48) 베트남 국회 2019. 11. 20. 의결, 2021. 1. 1. 발효한 것을 의미한다.

는 아니므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 중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9)</sup>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베트남 노동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인력 재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성급 인민 위원회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베트남 노동법」 제42조).

### Q 베트남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

**A** 「베트남 노동법」 제42조는 정리해고 사유를 ① 구조적·기술적 변동으로서 (a) 조직 또는 인력의 구조적 변경, (b) 제조 기타 산업의 변동에 수반하는 공정·기술이나 생산설비의 변경, 또는 (c) 상품의 변경, ② 경제적 변동으로서 (a) 공황 또는 경기 침체, (b)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 국제조약 등의 이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법인의 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① 구조적·기술적 변동 중 (a) 조직 또는 인력의 구조적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위 사유에 관한 근거 자료를 잘 구비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의 재사용계획(타 부서로의 배치 전환, 타 업무를 위한 직업훈련 등 재사용을 위한 계획과 부득이 해고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관한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상으로는 재사용계획에 대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노동관서의 신고 수리 절차가 사실상 승인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반대가 강할 경우 노동관서가 보완 명령을 하는 등 신고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2) 휴업 기간 내 해산 절차 진행

「기업법」과 「투자법」에서 정한 휴업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휴업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휴업 기간 경과 시에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9) 참고로, 회사의 해산은 「베트남 노동법」 제34조 제7항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만, 휴업만으로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휴업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해서 휴업하고자 할 경우, 당초 휴업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추가 휴업 신고(기존 휴업 신고의 연장·변경 형식이 아니라 신규 휴업 신고 형식)를 해야 한다(Decree 01 제66조 제1항).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기업등록소는 규정 위반을 통지하면서 회사의 법적 대표자에게 사업 중단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대표자가 설명 기한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업등록소는 해당 회사의 기업등록증을 취소하는 결정을 발급한다(Decree 01 제75조 제3항).

따라서 장기간 휴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업 기간 중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현황이 베트남 기업등록포털에 공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해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 ‘IV. 현지법인 해산(청산)’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조조정 가이드북

베트남



# IV





## 현지법인 해산(청산)

1. 해산 요건	66
2. 해산·청산 절차	68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의 채무는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하는가?	74
[Q&A] 해산하는 현지법인에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는가?	79
[Q&A]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80
[Q&A]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 하는가?	83

## IV

## 현지법인 해산(청산)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양수할 적절한 원매자가 없고, 자산 전부를 처분하고 현지법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투자자는 현지법인의 해산 또는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지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인 해산이 가능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의한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발적인 해산일 때는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IRC)을 반환하고, 「기업법」에 따라 현지법인을 해산·청산한다. 「투자법」상 절차와 「기업법」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휴업 신고(위 'III. 3. 가. 휴업 요건 및 신고' 참고)와 같다.

한편 「투자법」 및 「기업법」상 절차 이외에도, 해산하는 현지법인이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외부감사·세무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세무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미납 세금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현지법인 해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해산 요건

「기업법」 제207조에 따르면, (a)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회사 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 (b)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의 해산 결정,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c) 연속하여 6개월 동안 회사의 사원·주주 수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고, 실제 사원·주주 수에 부합하도록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sup>50)</sup>, 또는 (d) 회사의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① 모든 채무 기타 재산상 의무를 이행하고, ②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서 진행 중인 분쟁 관련 절차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해산된다.

50)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 감소하였음에도 1인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 수가 2인 이하로 감소하였음에도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 (b)와 같이 해산 결정/결의를 거쳐 현지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의 해산·청산 절차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절차	기한 / 소요기간	제출서류 등 비고
1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결의		소유주의 결정문(현지법인이 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사원총회 의사록·결의서(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결의서(주식회사인 경우) 작성
2	투자등록증 발급 관할기관(공단 내의 경우 관리위원회, 공단 외의 경우 기획투자국(DPI))에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신고 및 투자등록증(IRC) 반납	프로젝트 종료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반환하여야 함. (법정소요기간은 없으나, 실무상 10일가량 소요)	제출 서류: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신고서(규정 양식),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문/결의서, 투자등록증(IRC) 원본, 기업등록증(ERC) 공증본,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 관할기관 발급 서류: 투자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
3	현지법인 해산 결정/결의		소유주의 결정문(현지법인이 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사원총회 의사록·결의서(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결의서(주식회사인 경우) 작성
4	자산 처분 등의 제한	해산 결의일 즉시 제한됨.	
5	기획투자국 산하 기업등록소에 해산 결정/결의 통지	해산 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법정소요기간은 즉시(단, 실무상 3 영업일 소요)	제출 서류: 해산신고서(규정 양식), 해산 결정문/결의서, 채무변제계획서(잔여 채무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 관할기관 발급 서류: 접수증 관할기관 전산 반영: 베트남 기업등록포털에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 진행 중 표시
6	세무서에 해산 결정/결의 신고	해산 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순서	절차	기한 / 소요기간	제출서류 등 비고
7	현지법인의 본·지점, 대표사무소에 해산 결정/결의 공고	해산 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공고하여야 함.	
8	자산 청산과 채무의 변제 및 외부 감사·세무조사		<p>소유주(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사원총회(2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이사회(주식회사의 경우)가 청산·변제 업무 수행</p> <p>*단, 현지법인의 정관에서 해산시 청산 업무를 수행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변제 업무 수행</p> <p>**외투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회계법인 이 보고서 작성 및 세무서 대응</p>
9	기업등록소에 해산 신청서 제출 및 해산 등록	<p>회사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p> <p>해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수리(단, 해산하는 현지법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제기가 없어야 함)</p>	<p>제출 서류: 해산신고서(규정 양식), 청산 보고서, 변제한 채무 및 채권자 명단,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p> <p>관할기관 발급서류: 해산 확인서 (Notice on dissolution/termination of existence of the enterprise)</p> <p>관할기관 전산 반영: 베트남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법적 상태를 해산 완료로 등록</p>

## 2. 해산·청산 절차

### 가.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결의

「투자법」 제48조 제1항 (a)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종료된다.

**Article 48 Termination of operation of investment project**

1. An investor shall terminate its investment activities and/or investment project in the following cases:

(a) Where the investor [itself] makes the decision terminating the opera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

현지법인이 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소유주의 결정,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각각 필요하다. 이는 현지법인의 해산을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 전부를 중단하기 위한 결의이므로, 아래 '다. 해산 결정/결의'와 마찬가지로, 사원총회에서는 출석 지분율의 75% 이상,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지분율의 6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단, 해당 회사 정관에서 75% 또는 65%보다 더 높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결의**

Decree 31 제57조 제2항 (a)는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결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 발급 관할기관(공단 내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의 경우 기획투자국(DPI))에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를 신고할 때는 ①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신고서(규정 양식), ②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문/결의서, ③ 기업등록증(ERC) 공증본, ④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⑤ 투자등록증(IRC) 원본도 반납하여야 한다.

**Article 57.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ermination of investment projects**

1. An investment project shall be terminated in the cases specified in Clauses 1 and 2 Article 48 of the Law on Investment.

2. Termin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 a) If the investor decides to terminate the investment project himself/herself/itself as prescribed in Point a Clause 1 Article 48 of the Law on Investment, such investor shall send **the termination decision to the investment registration authority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the decision together with the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f any);

(...)

관할기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투자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심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무상 10일가량이 소요된다.

#### 다. 해산 결정/결의

「기업법」 제20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산 결정 또는 해산 결의는 (a) 사명과 본점 주소지, (b) 해산 사유, (c) 계약 청산, 채무 변제 등의 시한과 절차, (d) 급여 채무 등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 (dd) 소유주(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의장(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이사회 의장(주식회사인 경우)의 성명과 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회사의 해산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관에서 해산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의 경우 출석 사원의 75% 이상(「기업법」 제59조 제3항 (b)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출석 주주 보유 주식수 65% 이상의 찬성(「기업법」 제48조 제1항 (dd)호)이 각각 필요하다.

#### Article 207 Cases of and condition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1. **An enterprise shall be dissolved** in the following cases:

- (a) The duration of operation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expires without a decision to extend;

- (b) Pursuant to a resolution or decision of the enterprise owner in the case of a private enterprise, of the partners' council in the case of a partnership, of **the members' council or the company owner in the case of a LLC, or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 shareholding company;**
- (c) The company does not have the minimum number of members stipulated in this Law for a period of six consecutive months and does not conduct procedures to convert the form of enterprise;
- (d) The ERC is revoke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 on Tax Management.

2. **An enterprise is only allowed to be dissolved when it ensures it will pay all debts and other property obligations and is not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of a dispute at a court or arbitration agency.** The relevant managers and the enterprise stipulated in clause 1(d) of this article ar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debts of the enterprise.

#### **Article 208 Sequence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s 1(a), 1(b) and 1(c) of article 207 of this Law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1. A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shall be passed.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must contain the following main details:**
    - (a) Name and address of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 (b) Reasons for dissolution;
    - (c) Time-limit and procedures for discharging [liquidating] contracts and paying debts of the enterprise;
    - (d) Plan for dealing with obligations arising from labour contracts;
    - (dd) Full name and signature of the owner of the private enterprise, the company owner, or chairman of the Members' Council or Board of Management.
- (...)

## 라. 자산 처분 등의 제한

「기업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르면, 해산 결정 또는 해산 결의가 이루어진 날부터는 회사와 관리자 등은 (i) 재산의 은닉 및 분산, (ii) 채무상환청구권의 포기 및 감면, (iii) 무담보 채무를 담보부 채무로 전환, (iv) 신규 계약 체결(예외: 기업 해산 목적의 계약), (v) 자산의 저당, 담보, 증여, 임대, (vi) 유효한 계약의 종료, (vii) 증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Article 211 Prohibited activities as from date of decision on dissolution

1. A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n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the enterprise and managers of the enterprise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from conducting the following activities:
  - (a) Concealing, or dispersing any asset;
  - (b) Waiving or reducing the right to claim any debt;
  - (c) Converting any unsecured debts into debts secured by assets of the enterprise;
  - (d) Signing any new contract except where [the signing of a new contract] is for the purpose of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 (dd) Pledging, mortgaging, donating, giving or leasing out any assets;
  - (e) Terminating the performance of any contract which has taken effect;
  - (g) Raising capital in any other forms.
2.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the breach, the individual in breach of clause 1 above may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or criminal prosecution, or must pay compensation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 마. 해산 결정/결의 통지·공고

「기업법」 제20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해산 결정문이나 결의서, 관련 의사록은 해산 결정 또는 해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기획투자국 산하 기업등록소, 세무서와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있을 경우, 해산 결정문 또는 해산 결의서에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지급 기한·장소·방법, 채권자의 이익제기 기한·방법을 기재한 채무 변제 계획을 첨부해야 하고, 그 계획도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1) 구체적으로 해산 결정/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① 해산신고서(규정 양식), ② 해산 결정문/결의서, ③ 채무변제계획서(잔여 채무가 있는 경우), ④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 등을 기업등록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소는 해산 결정문/결의서와 채무변제계획서를 공고하여야 하고, 베트남 기업등록 포털에 회사가 해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공표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소의 공고·공표는 규정상 즉시 처리되어야 하나, 실무상 3 영업일가량 소요된다.
- (2) 세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해산 결정/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산 결정문/결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3) 또한, 해산 결정/결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산 결정문/결의서를 본점·지점과 대표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

#### Article 208 Sequence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s 1(a), 1(b) and 1(c) of article 207 of this Law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3. **Within seven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passing,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and the minutes of the meeting must be sent to the BRO, the tax office, and employees in the enterprise.**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must be **published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and must be **displayed publicly at the head office,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of the enterprise.**

If the enterprise has unpaid financial obligations, it must send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together with a plan on settlement of debts to creditors and people with related rights, obligations and interests. The plan on settlement of debts shall inclu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reditor; the amount of the debt, the time-limit, location and method of payment of such debt; and the method and time-limit for dealing with complaints of creditors.

4. The BRO must make an announcement of the status of the enterprise which is currently conducting procedures for **dissolution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information portal immediately after receiving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from the enterprise**, and must publish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and the plan on settlement of debts (if any) together with the announcement.

(...)

## 바. 자산 청산과 채무의 변제 및 외부감사·세무조사

### Q 해산하는 현지법인의 채무는 언제까지 변제하여야 하는가?

**A** 자산 청산 및 채무 변제 기한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아래 '사. 해산 신청서 제출과 해산'은 채무를 모두 해소한 후의 절차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 중에서 특별히 급여, 보험료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과 미납 세금은 위 '다. 해산 결정/결의 통지·공고' 단계에서 먼저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잔여 채무가 있으면 채무변제계획서도 함께 작성하여 통지·공고하여야 하는데, 채무변제계획서에 근로자 채무 및 조세채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채무 및 조세채무를 먼저 해결한 뒤에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해산 시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사 자산의 청산을 직접 실행한다.

### Article 208 Sequence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s 1(a), 1(b) and 1(c) of article 207 of this Law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2. The owner of a private enterprise, the members' council or company owner or the board of management shall directly organize the liquidation of assets of the enterprise, except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iquidation organization is stipulated by the charter of the company.  
 (...)

### (1) 자산의 청산

이때 「투자법」 제48조 제5항은 투자 프로젝트 종료 시 토지사용권과 건물 등 부동산은 베트남 「토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 Article 48 Termination of operation of investment project

(...)

5. The law on land and other relevant laws shall apply to dealing with the land use right and assets on the land upon termination of opera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베트남 「토지법」 시행에 관한 Decree No. 43/2014/ND-CP(이하 'Decree 43')<sup>51)</sup>의 제15b조에 따른다.

베트남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였거나, 토지를 임대받고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 건물(토지사용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대한 처분권이 모두 인정된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일부터 24개월 동안에는 할당/임대받은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sup>52)</sup> 양도할 수 있다.

51) 베트남 정부 2014. 2. 15. 공포, 2014. 7. 1. 발효 Decree No. 43/2014/ND-CP로, 2017. 1. 6. 공포, 2017. 3. 3. 발효 Decree No. 01/2017/ND-CP 및 2020. 12. 18. 공포, 2021. 2. 8. 발효 Decree No. 148/2020/ND-CP로 각 일부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52) 이때 타인이란 베트남 토지법 제169조 제1항 (b)호에 따라 기존 토지사용권자로부터 직접 토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로서 로컬 경제단체(기업), 가계와 개인으로 한정되고,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외국 기업)을 비롯하여 외투기업은 제외한다.

한편 베트남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임대료를 연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상 건물에 대한 처분권만 인정된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에는 임대받은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sup>53)</sup> 양도할 수 있다. 관할기관은 해산하는 현지법인과의 임대를 종료하고 지상 건물을 양수한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새로 임대한다.

만일 위 투자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 토지 및/또는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관할기관이 환수하며, 이때 토지사용권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 **Article 15b. Land expropriation against termination of investment project pursuant to legislation on investment**

Land expropriation against the **termin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pursuant to the legislation on investment, except the government's expropriation of land pursuant to Section 1, Article 64 and Section 1, Article 65 of the Land Law, shall proceed in the following manner:

1. If the government **allocates an area of land and charges the land use fee or leases the area of land and collects the rent in lump sum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lease**, land expropriation proceeds as follows:

- a) The investor can continue using the land area in 24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investment project terminates pursuant to the legislation on investment;
- b) **In 24 month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as per regulations, the investment can **transfer the land use right and sell legitimate properties on the land area to another investor** as per the laws.

If the investor fails to transfer the land use right and sell its legitimate properties on the land area to another investor after the 24-month extension of land use, the government shall expropriate the land area pursuant to **Point i, Section 1, Article 64 of the Land Law**.

53) 이때 타인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을 기존 토지사용권자가 아니라 베트남 관할기관(정부)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므로, 베트남 토지법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고 토지사용권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확대된다. 즉, 로컬 기업, 가게, 개인은 물론 외투기업도 포함된다(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은 베트남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외한다).

**Article 64 Land resumption as a result of breach of the law on land**

1. Cases of land resumption as a result of breach of the law on land comprise:

(...)

- (i) Where the State allocated or leased land for implement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but the land was not used within a consecutive 12 month period or the land use schedule was 24 months later than the schedule recorded in the investment project as from on-site receipt of handover of the land, then land must be put into use; where the land is not put into use, the investor is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he term of use for a period of twenty four (24) months and must pay to the State an amount of money corresponding to the land use fee or land rent applicable to the period of delay within the [extended] period; **if upon expiry of the extended period the investor has not yet put the land into use, the State shall resume the land without compensating for land and assets on the land**, except for force majeure.

(...)

2. If the government **leases the land area and collects the rent on annual basis**, land expropriation shall proceed in the following manner:

- a) The investor can continue using the land area in 24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investment project terminates pursuant to the legislation on investment;
- b) **In 24 months from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as per regulations, the investment can **sell legitimate properties on the land area to another investor** as per the laws.

The government shall expropriate the land area from the seller of the properties on the land area and lease it to the buyer of such properties;

- c) If the investor fails to sell its legitimate properties on the land area to another investor after the 24-month extension of land use, the government shall expropriate the land area pursuant to **Point i, Section 1, Article 64 of the Land Law**.

부동산 이외의 동산, 채권 등의 자산은 청산을 담당하는 소유주/사원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할 수 있다.

**Article 48 Termination of operation of investment project**

(...)

4. The investor shall itself liquidate the investmen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liquidation of assets upon termination of opera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except in the case prescribed in clause 5 of this article.

(...)

**(2)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회사 해산 시, 그의 채무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기업법」 제208조 제5항).

- (a)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기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수당
- (b) 미납 세금
- (c) 기타 채무

채무 변제 및 회사 해산 비용 지급 후, 잔여 재산은 사원·주주의 지분·주식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기업법」 제208조 제6항).

**Article 208 Sequence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s 1(a), 1(b) and 1(c) of article 207 of this Law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5. Debts of the enterprise shall be paid in the following order of priority:

- (a) Unpaid wages, retrenchment allowances,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law and other benefits of employees pursuant to the signed collective labour agreement and labour contracts.
- (b) Tax liabilities;
- (c) Other debts.

6. After payment of costs of the dissolution proceeding of the enterprise and debts, the remainder shall be distributed to the owner of the private enterprise, the members, shareholders or company owner in proportion to their ratio of ownership of capital contribution portions or shares.

(...)

**Q 해산하는 현지법인에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법적 대표자에게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있는가?**

**A** 베트남 현지법인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채무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에 이어 2순위로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실무상 세무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서는 청산(해산)이 마무리될 수 없고, 세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산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 2020. 10. 19. 발령, 2020. 12. 5. 시행 Decree No. 126/2020/ND-CP 제21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조세부과결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출국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해산 결의 후 관할기관에 해산 절차 개시를 통지하기 전에 법적 대표자가 한국으로 출국하고, 해산 절차는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주어 처리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다.

해산하는 회사가 직접투자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하는 외투기업<sup>54)</sup>인 경우, 한국 기업 등 외국인 투자자(사원·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직접투자계좌를 경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Circular 06 제6조 제2항 (dd)호, 제7조 제2항 (d)호).

54) 해당 회사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또는 해당 회사의 외국인 자본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Circular 06 제5조 제1항).

### Q 베트남 현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A** 베트남 현지법인에 출자하거나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을 취득한 한국 투자자는 당초 투자금을 베트남에 송금하기 전에 한국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신고(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후 베트남 현지법인의 해산·청산으로 투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사후보고로서, 청산자금 수령 즉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6호). 참고로 베트남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어한 경우에는 대출금도 투자금에 포함되므로, 대출금을 상환받은 경우에도 즉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외부감사 및 세무조사

해산하는 회사는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산사무를 위한 계정을 관리하게 된다. 이때 해산하는 회사가 외투기업이라면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외부감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되고, 미납 세금액이 있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이 때문에 현지법인 해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산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 업무 등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사. 해산 신청서 제출과 해산

해산하는 회사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는 기업등록소에 ① 해산신고서(규정 양식), ② 청산 보고서, ③ 채권자 및 변제한 채무 목록(해산 결정·결의 후 세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도 포함), ④ 서류 제출을 위한 위임장 등을 해산 신청 서류로서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구성원 또는 소유주, 사장, 법적 대표자



등은 해산 신청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들은 해산 신청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에는 미지급 채무, 미납 세금,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수당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해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개인적 지위에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 **Article 210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

1. An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documents:

- (a) Notice of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 (b) Report on liquidation of assets of the enterprise; list of creditors and amount of debts paid, including full payment of tax liabilities and payment of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for employees after the decision on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is made (if any).

2. Members of the board of management of a shareholding company, members of the members' council of a LLC, the company owner, the owner of a private enterprise, the director or general director,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or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are liable for the truthfulness and accuracy of the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3. If the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is inaccurate or contains false materials, then the persons referred to in clause 2 above are jointly liable to pay for interests of employees which remain unresolved, unpaid tax debts, and other unpaid debts,, and are personally liable before the law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as from the date of lodging the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of the enterprise to the BRO.

기업등록소는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해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회사의 법적 상태를 ‘해산’으로 등록한다(「기업법」 제208조 제8항). 아울러 기획투자국 기업등록부서에서는 해당 회사 앞으로 해산 확인서(Notice on dissolution/termination of existence of the enterprise)를 발급한다.

한편 앞의 ‘마. 해산 결정/결의 통지·공고’ 절차에 따라 해산 결정·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등록소는 위 해산 신청서 접수 없이도 해당 회사의 법적 상태를 ‘해산’으로 등록한다. 그러나 ‘바. 자산 청산과 채무의 변제 및 외부감사·

세무조사 절차 중 특히 세무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즉 세무조사 결과 세금 완납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의 기간 경과를 사유로 기업등록소에서 직권으로 해산 등록을 하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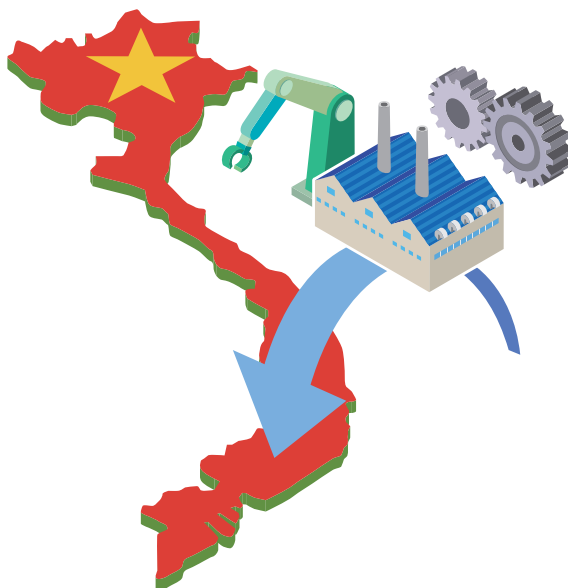
#### **Article 208 Sequence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enterprises**

Dissolution of an enterprise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s 1(a), 1(b) and 1(c) of article 207 of this Law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8. The BRO shall update the legal status of the enterprise on the national enterprise registration database if upon expiry of one hundred an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solution or decision on dissolution as stipulat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BRO does not receive any opinion on the dissolution from the enterprise or any objection from related parties, or does not receive same within fiv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n application file for dissolution.

(...)



### Q 현지법인의 해산 절차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상주해야 하는가?

**A** 현지법인 해산·청산을 위해 반드시 모회사 또는 현지법인 소속 한국인 인력이 베트남에 주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재원 등 모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베트남에서 이미 철수하고 잔류하는 인력이 없더라도, 앞서 설명한 해산·청산 절차로서 ① 해산을 결정·결의하고, ② 해산 결의 등을 기업등록소, 세무서와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③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현지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위 절차를 위하여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sup>55)</sup>의 승인과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지법인 해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주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법」상 법적 대표자가 30일 이상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임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두어 권한 대행을 시킬 수 있으므로,<sup>56)</sup> 법적 대표자는 해산 절차 완료 전에 미리 출국하고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주어 해산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55)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사원총회 의장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 또는 'Director'로서, 현지법인의 법인장에 해당)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 또는 사장이 법적 대표자가 된다.

56) 「기업법」 제12조 제5항, "Except for the case prescribed in clause 6 below, if an enterprise has only one legal representative and this person is absent in Vietnam for a period of more than thirty (30) days without authorizing any person to perfor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nterprise or is deceased, disappears [is missing], is prosecuted for criminal liability, is subject to temporary imprisonment, serves a prison sentence,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measures in a compulsory drug rehabilitation establishment or compulsory educational establishment, has his or her capacity for civil acts restricted or lost, has cognitive difficulties or difficulties with behavioural control, or is prohibited by a court from assuming a certain position, from practising or from doing certain work, then the company owner, the members' council or the board of management shall appoint another person to act as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V



## 현지법인 파산

1. 파산 개시 신청.....	86
[사례]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	88
2. 파산 절차.....	89
[Q&A] 베트남에서 실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89
[Q&A]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100

## V

## 현지법인 파산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주식이나 자산을 양수할 적절한 원매자도 없고, 현지법인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잔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지법인이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만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나서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 1. 파산 개시 신청

베트남 「파산법」(Law on Bankruptcy, 이하 「파산법」)<sup>57)</sup> 제5조는 기업의 파산 개시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전부 또는 일부 무담보 채권자는 변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받지 못한 경우, 파산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파산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변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이하 ‘지급불능’)이 된 경우, 회사의 법적 대표자(사장 등)<sup>58)</sup>는 파산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등은 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는 파산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 ⑤ 주식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의 보통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 집단(단, 보통주식 보유 비율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은 파산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57) 베트남 국회 2014. 6. 19. 의결, 2015. 1. 1. 발효한 Law No. 51/2014/QH11을 의미한다.

58) 대개 회사의 일상 경영을 담당하는 사장(General director)이 법적 대표자가 되나, 회사 정관에 따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의장 또는 회장, 주식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법적 대표자로 둘 수 있다. 또한 복수의 법적 대표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Ⅳ. 현지법인 해산(청산)’에서 설명한 해산 절차 진행 중에도 회사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파산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Article 5 Person having the right and obligation to fil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1. An unsecured creditor or partially secured creditor has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upon expiry of 3 months from the maturity date of a debt which an enterprise or a cooperative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repay.
2. Employees, the grassroots trade union, and the immediately higher grassroots trade union in a place where a grassroots trade union has not been established, have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upon expiry of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obligation to pay wages and other debts to the employees was due and not performed by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3.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has the obligation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becomes insolvent.
4. The owner of a private enterprise, chairman of the board of management of a shareholding company, chairman of the members' council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with two or more members, owner of a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an unlimited liability partner of a partnership company has the obligation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ir enterprise becomes insolvent.
5. A shareholder or a group of shareholders owning 20% or more of ordinary shares for at least six (6) consecutive months has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ir shareholding company becomes insolvent. A shareholder or a group of shareholders owning less than 20% of ordinary shares for at least six (6) consecutive months has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ir shareholding company becomes insolvent if it is so stipulated in the charter of the company.
6. A member of a cooperative or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member cooperative of an alliance of cooperatives has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 cooperative or the alliance of cooperatives becomes insolvent.

회사가 지급불능에 처한 경우, 법적 대표자(사장 등),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2인 이상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는 반드시 베트남 법원에 파산 개시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파산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

파산 개시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있을 경우)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파산법」 제28조 제5항<sup>59)</sup>. 나아가 파산 개시 신청 의무를 지는 자가 고의로 파산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적격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회사의 파산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담당 판사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베트남에서) 회사·조합을 설립하거나, 회사·조합의 관리자로서 활동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파산법」 제130조 제5항<sup>60)</sup>.

## 사례

### [사례] 채권 회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베트남 기업의 주요 자산인 공장 건물과 토지는 모두 은행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한국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베트남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한국 기업은 베트남 기업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베트남 법원에 파산 개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의 주주는 주식양수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직시하고, 한국 기업에 일정 기간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하였고, 이에 한국 기업은 파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59) "Any persons as stipulated by clause 3 and clause 4 of article 5 of this Law who fail to file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becomes insolvent must bear responsibility before the law. If any losses which arise after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becomes insolvent are due to the failure to file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they must be compensated for."

60) "If the holder of a managerial position in any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is declared bankrupt intentionally breaches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article 18, clause 5 of article 28 or clause 1 of article 48 of this Law, the judge shall consider and decide to deprive him or her of the right to establish, or to act as a manager of,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within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ople's court issues a decision declaring bankruptcy."



파산 선고가 되더라도 선순위 담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고 무담보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 변제 후, 남는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파산 신청이 채권 회수에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처럼 채무자 측에서 M&A 등을 통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변제 또는 변제 확약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 회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2. 파산 절차

베트남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보다는 지급불능 전후로 조업을 사실상 중단한 채 사업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은행 등 신용기관으로부터 비교적 큰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유동성 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파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성도 강조되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법원은 파산 절차를 전담하여 관리할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단적으로 하노이 법원에 파산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는 파산 절차의 진행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 Q 베트남에서 실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A 베트남 대법원 2017. 3. 16. 채택 2017. 7. 1. 시행 Resolution No. 03/2017/NQ-HDTP는 대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판결 및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산 결정, 파산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이의 제기 사건 등은 반드시 베트남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베트남 대법원 웹사이트(URL: [toaan.gov.vn/webcenter/portal/tatc/thong-bao-tuyen-bo-pha-san](http://toaan.gov.vn/webcenter/portal/tatc/thong-bao-tuyen-bo-pha-san))에서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채권자 명부 제출, 파산 선고, 파산 선고에 대한 불복 사건, 이의 제기 사건,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한 합의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관련 판결 또는 결정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산관할법원은 대부분 성/중앙직할시 인민법원이다.

베트남에서 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 개시 결정 → 채권 신고서 및 채권자 명부 제출 → 채권자협의회 구성 → 파산 선고 → 파산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약식 파산 선고도 가능하다. (a) 개인기업의 소유주,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의장 또는 소유주 등이 파산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파산대상회사가 수수료 또는 파산비용 예납금을 납부할 현금 기타 자산이 없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파산 개시 신청을 수리하였으나 파산대상회사가 파산비용을 납부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약식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약식 심사 기간은 30일이다(「파산법」 제105조).

#### **Article 105 Declaration of bankruptcy of enterprise or co-operative in accordance with summary procedures**

1. The people's court shall resolve bankruptcy in accordance with summary procedures in the following cases:

- (a) A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s is fil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3 and 4 of article 5 of this Law but the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has no money or other assets to pay bankruptcy fees or to make advance payment of bankruptcy expenses;
- (b) After a court has accepted jurisdiction over a petition to commence bankruptcy procedures, the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has no assets to pay bankruptcy expenses.

2. In the case where it is considered that an enterprise or a co-operative falls within the category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people's court shall notify participants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that it shall resolve the case in accordance with summary procedures.
3. Within a time-limit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ople's court serves a notice as stipulat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people's court shall consider and declare that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bankrupt for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or continue th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ocedures and notify participants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4. If the people's court issues a decision declaring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bankrupt in accordance with clause 1(b) of this article, the petitioner shall not be refunded bankruptcy fees or advance payment for bankruptcy expenses which were paid.

## 가.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파산대상회사가 지급불능인 경우, 관할법원은 파산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파산 절차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발급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성/중앙직할시 인민법원(People's court of a province or a city under central authority)이 파산 관할법원이 된다. (a) 역외 재산 또는 역외 파산관계인(채권자, 근로자, 주주, 채무자 등)이 있는 경우, (b) 지급불능인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성/중앙직할시에 설치된 경우, (c) 지급불능인 회사의 부동산이 여러 성/중앙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 (d) 지급불능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많거나, 「파산법」 제59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등 사안의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한국 투자자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해당 현지법인이 소재한 성/중앙직할시 인민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의 파산 절차는 지방법원(People's court of a rural district, urban district, town or city of a province)이 관할한다(「파산법」 제8조).

### Article 8 Jurisdiction of courts to resolve bankruptcy

1. The people's court of a province or a city under central authority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rovincial people's court) has jurisdiction to resolve bankruptcy in respect of enterprises with business registration or enterprise registration and cooperatives with business registration or cooperative registration made in such province and in one of the following cases:
  - (a) Bankruptcy involving overseas assets or overseas participants in bankruptcy procedure;
  - (b) An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with branches or representative offices located in many rural districts, urban districts, towns or cities of various provinces;
  - (c) An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having real estate located in many rural districts, urban districts, towns or cities in various provinces;
  - (d) Bankruptc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of a rural district, urban district, town or city of a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trict-level people's court) which the provincial people's court takes to resolve due to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matter.
2. A district-level people's court has jurisdiction to resolve a bankruptcy as to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whose head office is located in a rural district, urban district, town or city of the same province and such bankruptcy does not fall into the cases stipulated by clause 1 of this article.
3. The People's Supreme Court shall provide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이러한 관할법원의 결정은 파산 개시 신청인, 파산대상회사, 채권자, 파산대상회사의 본점 주소지 관할 검찰, 민사집행기관, 세무서와 기업등록소 등에 송부하고, 기업등록 포털과 관할법원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2개의 해당 지역 신문에 연속으로 공고한다(「파산법」 제43조).

한편 파산대상회사의 자산 관리를 위하여 자산 관리 책임자 또는 자산 관리 회사(이하 총칭하여 '자산관리인')를 선정하고(「파산법」 제45조), 파산대상회사는 민사채무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단, 확정된 손해배상채무와 근로자의 급여 지급은 예외). 다만 담보부 채권은 자산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파산법」 제48조).

또한 법원의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 중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은 자산 양도, 무담보채권의 담보부채권 전환, 만기 전 채무 상환이나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 증여, 파산대상회사의 영업 외 목적을 위한 거래, 기타 자산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거래 등은 무효로 간주된다(단, 상대방이 모회사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까지 무효로 간주함)(「파산법」 제59조 제1항).<sup>61)</sup>

#### Article 43 Notification of decision to commence or not to commence bankruptcy procedure

1. A people's court's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must be sent to **the person filing the petition**, to **the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creditors**, **the people's procuracy at the same level**, **the civil judicial enforcement office**, **the taxation authority** and **the business registration body of the locality** where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located and must be posted on **the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 **the portal of the people's court** and in **2 consecutive issues of a local newspaper of the locality** where the head office of the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located.
2. A people's court's decision not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must be sent to the person filing the petition,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subject to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people's procuracy at the same level.
3. The time limit for sending and notifying the decision to commence or not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is 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issuing the decision by the people's court.

#### Article 45 Appointment of asset management officer and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1. Within 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issuing a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judge shall be responsible to appoint an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n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2. Grounds for appointment of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61) 한국의 부인권 제도와 유사하다.

- (a) The individual holds a practising certificate for asset management officer; the enterprise is an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 (b) Recommendation on appointment of an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n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made by the person filing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 (c) [The proposed]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has no interests related to the bankruptcy matter;
  - (d) The nature of resolving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 (dd) [The proposed]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is not being a relative of any participant in the bankruptcy procedure.
3. A written appointment of an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or liquidation enterprise must contain the following main contents:
- (a) Full date;
  - (b) Name and address of creditors, and of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 (c) Name and address of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 (d)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e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 (dd) Grounds for appointment of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 (e) Advance payment of the cost of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 (g) Specific duties and powers of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 (h) Signature of the judge and stamp of the people's court.

**Article 48 Prohibited operations of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subsequent to a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1. Subsequent to a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prohibited** from carrying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 (a) To conceal, dispose of or donate any assets;

- (b) To pay any unsecured debts except for the unsecured debts arising subsequent to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and paying wages to employee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as stipulated by sub-clause (c) of article 49.1 of this Law;
  - (c) To abandon any right to claim a debt;
  - (d) To convert unsecured debts into debts secured or partly secured by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2. Any transactions as set out in clause 1 of this article shall be invalid and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is Law.

#### **Article 59 Transactions which shall be deemed invalid**

1. A transaction of an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was conducted within the six (6) months prior to the date when the people's court issued a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shall be deemed invalid if it falls into one of the following cases:
- (a) The transaction is related to asset assignment which is not at market price;
  - (b) Conversion of an unsecured debt into a debt secured or partly secured by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 (c) Payment or setoff which benefits a creditor in respect of a debt that has not yet become due or with a sum that is larger than a debt which has become due;
  - (d) Donation of the assets;
  - (dd) The transaction is outside the purpose of the business operation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 (e) Other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of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2. A transaction of an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as set out in clause 1 of this article which is conducted with related persons within the eighteen (18) months prior to the date when the people's court issued a decision to commence the bankruptcy procedure shall be deemed invalid.
3. The related persons set out in clause 2 of this article include:
- (a) With regard to a subsidiary company: the parent company, a manager of the parent company or any person who has the power to appoint such managers.

- (b) With regard to a parent company: any subsidiary company; with regard to a cooperative: any enterprise established by the cooperative;
  - (c) Persons or a group of persons capable of controlling the decision making of and operations of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via its management bodies;
  - (d) With regard to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a manager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 (dd) The spouse, parent or foster parent, child, adopted child, or sibling of a manager of an enterprise or cooperative, or of a member or shareholder who holds the controlling capital contribution or shares;
  - (e) Any individual authorised to represent those described in sub-clauses (a), (b), (c), (d) and (dd), of this clause;
  - (g) Any enterprise in which any of the persons described in sub-clauses (a), (b), (c), (d), (dd), (e) and (h) of this clause hold interests to the extent that they control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anagement bodies of the enterprise;
  - (h) Any group of persons who agree to orchestrate together in order to take over a proportion of capital contribution, shares, or interests in the company or in order to control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reof.
4.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are responsible to consider any transactions of an insolvent enterprise or cooperative and, if finding any transactions as set out in clause 1 and clause 2 of this article, to request the people's court to declare them invalid.

## 나. 채권신고서 제출 및 채권자명부 제출

파산대상회사의 채권자는 법원의 파산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인에게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산관리인은 채권자명부를 작성·공포해야 한다(「파산법」 제66조 및 제67조).

한편 자산관리인은 파산대상회사의 채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명부도 작성·공포해야 한다(「파산법」 제68조).



**Article 66 Submission of notices requesting payment of debts**

1. Within a time-limit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f the people's court to commence bankruptcy procedures, creditors must submit notices requesting payment of debts to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2. A notice requesting payment of debts must include the following items:
  - (a) Name, address, nationality and identity number of the creditor or of his or her representative;
  - (b) Total debts payable, including each debt, the amount of due debts and the amount of interest due but unpaid; the amount of undue debts; the amount of secured debts and security interests; the amount of unsecured debts payable by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and contractual damages (if any).
3. A notice requesting payment of debts shall be accompanied by data and evidence proving such debts. A notice requesting payment of debts must be signed by the creditor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4. If there is an event of force majeure or an objective impediment, the duration of such force majeure or objective impedime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ime-limit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ticle 67 Preparation of list of creditors**

1.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expiry for submission of notices requesting payment of debts,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must prepare a list of creditors, collect documents relating to the debts and publicly post the list of creditors. The list of creditors must specify names, addresses, nationalities and identity numbers of credito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amount of the debt owed to each creditor categorized into secured and unsecured debts and due and undue debts.

2. The list of creditors must be publicly posted [listed] at the head office of the people's court conducting the bankruptcy procedures, at the main headquarter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and on the portal for enterprise registration and the portal of the people's court, and must be sent to creditors who submitted notices requesting payment of debts within ten (1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posting [listing].
3. Within a time-limit of five (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expiry for posting, creditors and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has become insolvent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judge to review the list of creditors. In the case of force majeure or an objective impediment, the duration of such force majeure or objective impedime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ime-limit stipulated in this clause.
4. Within a time-limit of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petition for review, the judge must consider and resolve the petition; and if the judge considers there are grounds for the petition, he or she shall make amendments of or additions to the list of creditors.

#### **Article 68 Preparation of list of debtors**

1. The asset management officer or asset management and liquidation enterprise must prepare a list of debtor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has become insolvent. The list must specify names, addresses, nationalities and identity numbers of debto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amount of the debt owed by each debtor categorized into secured and unsecured debts and due and undue debts.
2. Within a time-limit of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bankruptcy procedures, the list of debtors must be publicly posted [listed] at the head office of the people's court conducting the bankruptcy procedures and at the main headquarter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and must be sent to debtors for ten (1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posting [listing].
3. Within a time-limit of five (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expiry for posting, debtors and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which has become insolvent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judge to review the list of debtors.
4. Within a time-limit of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petition for review, the judge must consider and resolve the petition; and if the judge considers there are grounds for the petition, he or she shall make amendments of or additions to the list of debtors.

## 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담당 판사는 자산 목록과 채권자명부 작성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야 하고(「파산법」 제75조 제1항)<sup>62)</sup>, 무담보채무 총액의 51% 이상 채권자가 참석해야 채권자협의회가 성립된다(「파산법」 제79조 제1항)<sup>63)</sup>.

## 라. 파산 선고

법원은 (i) 채권자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파산법」 제106조), (ii)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생방안이 부결된 경우, (iii)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사의 파산을 승인한 경우, 또는 (iv) 회생방안이 작성되었으나 파산 대상 회사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파산 선고를 한다(「파산법」 제107조).

즉,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파산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생방안을 협의하고 회생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파산 선고를 하는 점이 특이하다. 실무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Article 106 Decision declaring bankruptcy when meeting of creditors is unsuccessful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a report on results of the meeting of creditors, the people's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declaring that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bankrupt in the cases stipulated in clause 3 of article 80, clause 4 of article 83 and clause 7 of article 91 of this Law.

62) "The judge must convene a meeting of creditors within a time-limit of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inventory of assets in the case where the conduct of the inventory of assets is completed after finalization of the list of creditors or from the date of finalization of the list of creditors in the case where the conduct of the inventory of assets is completed prior to finalization of the list of creditors, unless a meeting of creditors is not required to be he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5 of this Law."

63) "The number of creditors representing at least fifty-one (51) per cent of the total unsecured debts attend the meeting."

### Article 107 Decision declaring bankruptcy of enterprise or co-operative after resolution of meeting of creditors

1. Within a time-limit of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a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creditors requesting declaration of bankruptcy as stipulated in article 83.1(c) of this Law, the people's court shall consider and make a decision declaring that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bankrupt.
2. After the meeting of creditors has passed a resolution applying the procedures for recovery of business operations, the people's court shall issue a decision declaring that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is bankrupt in any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a)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fails to formulate a plan for recovery of its business operations within the time-limit stipulated in article 87.1 of this Law;
  - (b) The meeting of creditors does not approve the plan for recovery of business operations of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 (c) The enterprise or co-operative fails to implement the plan for recovery of business operations.

## 마. 파산 집행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법」, 베트남 「민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산관리인의 감독하에 자산 매각, 채무 상환, 회사 청산 등이 이루어진다(「파산법」 제12장, 제119조 내지 제128조).

### Q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A** 베트남 「조세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sup>64)</sup>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된 기업으로서 「파산법」에 따라 각종 채무 등의 지급 후 조세(가산세 기타 지연이자과 과태료 등을 포함함)를 납부할 자산이 없는 경우, 그 미납세금 등은 면제될 수 있다.

64) 베트남 국회 2019. 6. 13. 의결 2020. 7. 1. 시행 Law No. 38/2019/QH14를 의미한다.

구조조정 가이드북

베트남



# VI



## 기타 유의 사항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 104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105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 106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 107

## VI

## 기타 유의 사항

##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앞서 설명한 지분·주식양수도, 자산 매각, 해산 또는 파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는 투자자가 계속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현지법인을 경영하면서 일정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기업법」상 감자 절차를 통해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고 해당 지분·주식의 출자액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법인은 기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영업하고 정관자본금 감자 이후에도 부채와 기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원·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자본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의 결정(1인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주식회사인 경우)를 거쳐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있다(「기업법」 제68조 제3항, 제87조 제3항, 제112조 제5항). 현지법인은 정관자본금 감자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업등록기관에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며, 이때 감자에 관한 소유주의 결정문, 사원총회·주주총회의 결의서와 의사록, 최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업등록기관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정관자본금 감자 정보를 업데이트(기업등록증 변경 등록)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업종별 법정자본금이나 「토지법」상 총투자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현지법인이 보유 및 유지해야 하는 규모의 정관자본금은 유지해야 하고, 그 이하로 감자할 수는 없다. 또한 감자를 기업등록증에 등록하는 절차는 법리상으로는 관할기관(회사 본점 소재지 기획투자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회사의 신청 시 다른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면 관할기관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 실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변경 절차를 사실상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감자와 같이 외국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여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 베트남 현지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앞서 설명한 지분·주식양수도, 주요 자산 매각과 휴업, 해산(청산) 등의 방안은 모두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각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법」이 정한 각 의사결정기구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달리 의사정족수(Quorum)의 경우, 「기업법」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의사정족수 기준을 낮추어 2차 또는 3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결정족수는 회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현지법인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 정족수]

의사결정기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정족수	(1) 지분 65% 이상 출석, (2) 1차 미달 시 15일 내 50% 이상 출석, (3) 2차 미달 시 10 영업일 내 출석 사원 수와 무관하게 개최 <sup>65)</sup>	(1) 의결권 총수 50% 초과 출석, (2) 1차 미달 시 30일 내 33% 이상 출석, (3) 2차 미달 시 20 영업일 내 출석 주주 수와 무관하게 개최 <sup>66)</sup>	(1) 이사 3/4 이상 출석, (2) 1차 미달 시 7일 내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sup>67)</sup>
의결정족수	보통결의: 출석 사원의결권 65%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 사원의결권 75% 이상 찬성 <sup>68)</sup>	보통결의: 출석 주주의결권 50% 이상 찬성 특별결의: 출석 주주의결권 65% 이상 찬성 <sup>69)</sup>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sup>70)</sup>

참고로, 1인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총회를 둘 경우, 의사정족수는 총 사원의 2/3 이상 출석이고,

65) 「기업법」 제58조 제1항, 단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66) 「기업법」 제145조, 단 의사정족수와 2차·3차 소집일 기한은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67) 「기업법」 제157조 제8항, 단 2차 소집일 기한은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68) 「기업법」 제59조 제3항, 단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69) 「기업법」 제148조 제1항·제2항, 단 정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70) 「기업법」 제148조 제12항

보통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사원의 과반수 또는 총 지분 50%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원의 찬성이며,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사원의 75% 이상 또는 총 지분 75% 이상을 보유하는 사원의 찬성으로 한다(「기업법」 제80조 제5항 및 제6항).

### 3. 투자금 회수 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 가. 베트남 내 직접투자계좌의 사용

외투기업은 베트남에서 외국환거래 업무 인가를 받은 은행(외국은행의 현지 지점 포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화 표시 계좌 1개 및/또는 동화 표시 계좌 1개의 직접투자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직접투자계좌의 가장 중요한 용도로 자본금 납입을 이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고, 이런 점에서 속칭 '자본금계좌'라고도 칭한다. 직접투자계좌의 그 외 용도로, 지분·주식양수도 시 양수도대금 수령,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정관자본금 감자액 반환 등도 베트남 현지법인의 직접투자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함은 앞서 'II. 3. 다. 지분·주식 양도 인허가 및 대금 지급', 'IV. 2. 바. 자산 청산과 채무의 변제' 및 'VI. 1. 「기업법」상 정관자본금의 감자'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 매각 대금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지급되고(직접투자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 해당 현지법인을 해산·청산하는 단계에서 잔여 자산이 직접투자계좌를 통해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 나.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보장

「투자법」 제12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 의무, 즉 관련 세금 납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과 자산을 본국 기타 해외로 송금 및 반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① 투자 자본금 및 청산금(주식·지분 양도 대가 및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 ② 투자 수익(배당금 등)

## ③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자금 기타 자산

**Article 12 Guarantee of right to remit assets of foreign investors overseas**

After a foreign investor has fully discharged its financial obligations to the State of Vietnam in accordance with law, it is permitted to remit overseas the following assets:

1. Invested capital and proceeds from liquidation of its investment.
2. It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3. Other monies and assets lawfully owned by the investor.

실무상으로도 주식·지분 양도세,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증명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주식·지분 양도 대가와 배당금 등의 송금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세금 신고를 하는 데에 실무상 1년여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산금(잔여재산 분배)을 송금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4.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신고

한국 법상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해당 외국법인과 임원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한국 거주자가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증권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외직접투자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베트남 현지법인에 출자하거나 그의 지분·주식을 취득한 한국 기업은 당초 베트남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에 위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지분·주식 매각, 해산·청산 등으로 베트남 투자를 철수하고 투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베트남 현지법인의 해산·청산에 앞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연간사업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제5호), 해산·청산 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OTRA자료 23-046

## 베트남 구조조정 가이드북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3년 6월

판사항 개정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 (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국내복귀지원팀

I S B N 979-11-402-0663-6 (93320)  
979-11-402-0664-3 (95320)(PDF)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와 법무법인(유한)지평에게 있습니다.

